

제2904호 2023. 7. 7.(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298호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5299호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8
- 전라북도 조례 제5300호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 10
- 전라북도 조례 제5301호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12
- 전라북도 조례 제5302호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16
- 전라북도 조례 제5303호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전라북도 조례 제5304호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전라북도 조례 제5305호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2
- 전라북도 조례 제530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6
- 전라북도 조례 제530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 29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17호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807호 전라북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 33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7호 하장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고시 ..... 12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8호 창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9호 삼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0호 삼평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1호 삼평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2호 죽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3호 동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4호 동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5호 우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6호 연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2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7호 우치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3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8호 백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3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9호 장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 13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0호	전라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13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2호	교항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3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3호	봉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3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4호	덕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3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5호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3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6호	금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3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7호	백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8호	벽골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9호	무풍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0호	사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1호	산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2호	만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3호	용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4호	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5호	점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4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6호	삼유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14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7호	삼유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5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8호	삼유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9호	삼유천 폐천부지 고시	156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0호	삼례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58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1호	북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59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2호	하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6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3호	일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6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4호	고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16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5호	모악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163

##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예술기획미술교육연구소)	17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완주서예동행회)	17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9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17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17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1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17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7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8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7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18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6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북식품산업협의회)	18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3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19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6호	제402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191

## 지시사항

○ 2023. 6. 30.(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95
-----------------------------------	-----

## 시 군

○ 완주군 고시 제2023-68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봉동 대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198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298호

###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북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 2.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행정전문가
4. 그 밖의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

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①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자료를 취합·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입법평가 분석지표(제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b>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b>				
조례명					
조례구분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자치조례				
관계법령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 2000. 00. 00. (조례 시행일) ~ 200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평가의견	*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첨부자료	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자	실국명	부서명	담당명	담당		행정전화
					담 당	
				담당자	○○○	

※ 「관리번호」란은 입법평가 총괄부서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299호

##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0호

###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자원조달 방안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민의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1호

###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기술”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3. “농업기계산업”이란 농업기계 완성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모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후방 산업과 농업기계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세부 산업군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기계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에게 그 수립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산업 육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라북도 및 시·군이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농업기계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농업기계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농업기계 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농업기계산업 신사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사업
6. 농업기계 신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농업기계제품 공공구매 등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3.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 4. 농업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5.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6. 농업기계 관련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전라북도내 시·군의 농업기계산업 담당 국장
- 2. 농업기계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3. 그 밖에 농업기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기계산업의 유공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2. 농업기계산업 발전에 유공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기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2호

##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시·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후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도보 또는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3호

###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대행자”로 한다.

제9조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대행자”로 한다.

제11조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을 “제4조제1항, 제4

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4호

##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소년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성폭력처벌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폰, 기타”를 “휴대전화, 그 밖의”로, “등 「전기통신기본법」”을 “등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청소년”을 “그 밖에 청소년”으로, “기타 시설”을 “그 밖에 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를 “도지사”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유관 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도지사”로, “제8조 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13”을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일신상의”를 “개인 사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 사유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도지사”로,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5호

##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라북도
2. 전라북도경찰청

3. 전라북도소방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5. 도로교통공단

6.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1. 자전거,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에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에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6호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전라북도청 체육정책과장,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1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조례 제5307호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담당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전담하여 지원·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 학교 학생상담담당자와 학생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교육청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국장과 학생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학생상담담당자
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생상담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제1항의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 2. 학생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3. 학생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상담실 설치·운영 시 학교 또는 소속시설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상담담당자의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 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소진 예방, 사기 진작 등에 관한 사항
- 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규칙 제3217호

###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과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과장(관,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 훈령 제1807호

### 전라북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북도가 정보보안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전라북도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전라북도의 각 부서별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내부망”이란 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업무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인터넷망”이란 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상용 인터넷망”이란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8.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

- 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9.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1.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2.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3.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4.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대외비, 비공개 업무자료 이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6.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7.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8. “개별사용자”란 도지사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도지사와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9. “공무원 등”이란 전라북도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병역법」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

- 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0.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1. “대도청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2.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23.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전라북도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암호자재”란 비밀을 소통·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5.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26.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7.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28. “암호자재 제작업체”란 암호자재의 저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29.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0.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보안 위협 행위
- 나. 국가와 국익에 위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
- 다.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 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
- 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
- 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
- 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 문서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
31.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2.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3. “국가보안관제체계”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34. “부문보안관제센터”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 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 라.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

제센터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

- 3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 36. “각급 기관”이란 전라북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전라북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와 시·군(본청·직속기관·읍면동사무소·사업소 및 시군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7.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 3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 39.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 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내규”라 한다)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업무에 적용한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도지사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 정보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개정
-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 9. 전라북도 및 시군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등 정보보안업무 감독
-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 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시군의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보안내규)** ① 시군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내규(또는 지침·규정·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할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 주관기관과(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지사 : 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시·군

2. 시장·군수 : 읍·면·동·사업소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점검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정보보안교육)** ① 도지사는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의 모든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11조(보안책임)** ① 전라북도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2조(보안대책 수립)** 도지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을 포함한다)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운영 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도지사는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보안성 검토**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군에서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으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를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검토 기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3.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 6.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 7. 재난관리·국민안전·치안유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
  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시군에서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상용 인터넷망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 등의 인사·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 ③ 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하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하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배포할 수 있으며, 하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

검을 실시한다.

**제16조(검토 생략)**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장비·물품 도입
  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 운영·유지보수·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 가.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나. 전화기·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다. 기존 운영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사업
  4. PC·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 문서)** 각급 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현황 제출)** 도지사는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시군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절 제품 도입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어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호·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이전 한 정보통신제품

②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4. 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③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제22조(상용 암호모듈 도입시 고려사항)**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적용 이전에 해당 상용 암호모듈의 정상 동작여부, 정보시스템 적용단계에서 오류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 기관의 장은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24조(도입현황 제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 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등을 사전확인 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수행**

**제25조(계약 특수조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용역업체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
- 1의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자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는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제5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 ④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

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조치 후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 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31조(검증대상 제품)**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검증 기관 및 신청)**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본청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이하 “검증신청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1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검증 신청 시 제출물)**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도는 국가정보원에 제출, 시군은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신청 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성 시험)** ① 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34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검증신청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취약점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취약점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취약

점을 제거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이행여부 확인)** ① 도지사는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9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점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 각급 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40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6]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 ③ 각급 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 ④ 각급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41조(보안·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스위치·라우터 등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 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 관리 허용
    -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 나.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
  - 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운영
  -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
  - 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 ② 보안·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안·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제42조(무선랜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 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④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제43조(이동통신망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WCDMA·LTE·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현장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하에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영상회의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전용(專用)선·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음성·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인터넷전화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운영
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6. 백업체제 구축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

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위하여 게임·음란·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용메일, 웹하드 등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외교통신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팩스·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파견사용 정보통신망)**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제48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9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PC·서버·네트워크장비·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운영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자산 중요도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보존방법, 접근권한, 장애대응 등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 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규정(내규 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인 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도구 등을 반입 또는 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51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2조(서버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조·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 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전용 단말기 지정·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 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

점검을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항·항만·전력·가스·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통·에너지·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구축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 연동 수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공개서버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조·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로그기록 유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인·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조·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조·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 분실·탈취·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폰·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사물인터넷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 간 자료전송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 2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원격근무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2.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 원격근무자를 식별·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4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3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국제회의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을 위하여 PC·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 전화기·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 국제회의 참가 공무원 등은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 디스크·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교체·반납·양여·폐기·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안전하게 삭제해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자료에 따라 대외비·비밀을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가 저장된 매체의 경우에는 소각·파쇄·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고, 이외 자료가 저장된 매체의 경우에는 완전파괴 또는 전용프로그램으로 삭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절 자료 보안

**제61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

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운용할 수 있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3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6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①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 비밀의 전자적 처리로 발생하는 각종 로그기록·관리 기능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리 기능

**제64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발신 또는 등재·열람
  - 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 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 등이 다른 공무원 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운영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2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발신 또는 등재·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저장

③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휴대용 저장매체·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3조제12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발신 또는 등재·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5.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 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 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모든 공무원 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5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만 제65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감사·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 등에게 제65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 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제66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휴대용 저장매체·휴대폰 등에 저장·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신하거나 저장·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휴대용 저장매체·휴대폰,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분석·평가결과를 포함한다)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 운용현황
2.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포함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결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빅데이터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용·남용 방지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수집·분석 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

## 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절 사용자 보안

**제72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2. 비밀 취급 시 비밀 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3.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제73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노트북·휴대폰·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8.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74조(계정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금지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같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전자우편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운영할 경우 다른 전자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 적용
2.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 표시
3.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

③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조·변조, 저장매체의 훼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일반용으로 구분·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입·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장의 암호자재 운용·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과쇄하여야 한다.

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태블릿·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마우스·모니터·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 공무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출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조건부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규정 위반자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② 비밀 누설·분실·침해·유기·무단방치, 개인정보 부정이용·무단유출·무단열람·관리소홀, 그 외 보안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사고(위규) 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 이외 정보보안 단순위규자에 대한 징계조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제5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80조(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
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5.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1조(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하고 인터넷·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협의체 구성·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각급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융합 보안

##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83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암호실
2. 통합데이터센터
3. 암호자재 설치 및 정비 장소
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 집중제어 국소
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식별·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과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4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저장·분석하는 CCTV·IP카메라·이동형 영상촬영장비·중계서버·관제서버·관리용PC

등의 기기·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6조(RFID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물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대상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환경정보 등의 수집·저장·가공·활용하는 시스템(이하 “RFID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 관리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7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감독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8조(재난 방지대책)**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절 전자파 보안

**제89조(대도청 측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TSCM)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증축, 개축, 대규모 수선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회의·회담·협상·행사 장소
4. 그 밖에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소·장비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0조(무선통신망 보안)**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무선랜을 제외한 무선통신망·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 보안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점검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①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백업·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1절 훈련 및 진단**

**제92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한 훈련 후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급 기관의 장은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이행여부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 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
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보안조치(안전성, 신뢰성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점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5.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
6.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 유출 또는 암호체계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
7. 각급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받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하고, 보안진단결과 국가정보원장의 개선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급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이행여부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3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①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 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운용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가능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제94조(평가 실시)** 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법·지침에 따라 시·군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수 있으며, 평가대상·일정·지표 등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5조(자체 평가)** ① 시·군에서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을 시·군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6조(현장 실사)** ① 도지사는 시·군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하여 검증(이하 “현장실사”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 실사를 위해 증빙자료 및 장소제공, 담당자 면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3. PC 등 단말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4.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5. 그 밖에 정보보안 실태평가 지표

- 제97조(평가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군에서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 제1절 기본사항

**제98조(사용 원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취급인가자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배부·운용·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정·부책임자 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1조(암호자재 설치·운영 장소)**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102조에 따른 암호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암호실 관리)** ①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암호문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문을 평문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을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평문으로 문의하는 등 암호문과 평문을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제공 및 반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외국기관(주한 외국인·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제105조(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에게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관련문서 생산·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 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III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I·II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I·II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에 관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도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개발 및 제작**

**제107조(개발 및 제작)** ① 각급 기관의 장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성
2. 용도 및 보호대상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명칭
2. 개발 업체
3. 암호알고리즘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8조(소통 및 관리 등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10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절 지원요청 및 사용승인

**제109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지원

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사용기간 및 장소
5. 사용(운용)자 직책·성명
6.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8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0조(암호장비 사용 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도입·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성명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보안대책

② 제1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사)** 각급 기관의 장은 제110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2조(외국산 암호자재·장비 사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하에 운용·관리한다.

**제113조(목적 외 사용금지)** 각급 기관의 장은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암호자재·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절 운용 및 관리

**제114조(운용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2.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유지와 월 1회 확인
3. 서식 제9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유지
4. 암호자재를 배부·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
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 후 5년간 보관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제115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114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6조(배부·반납 및 운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반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수량·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변경 사용)** ①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8조(인계인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관리하는 정·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관리하는 정·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19조(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0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운영관리실태 점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암호자재 운용·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약요인에 대하여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사고발생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분실·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 제5절 정비 및 파기

**제122조(정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
2. 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실시
3. 자체 정비절차 수립

**제123조(파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사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성명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용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 하여 상급기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

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방법

### 제6절 암호알고리즘

**제124조(개발 및 지원요청)**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상급기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 개발 고려사항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하고

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 암호체계
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 자체 안전성 평가 등 관련자료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25조(적용 및 운용)** 각급 기관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반납 및 파기)** 각급 기관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 제1절 보안관제

**제127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간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보안관제 인원)**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

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 제26조 및 제30조 준용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제129조(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탐지규칙을 검토하여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전송
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수신 금지
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공격정보 탐지·수집)**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탐지·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2. 공격 주체 및 피해자 식별을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식별에 필요한 정보

**제131조(초동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IP,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기록의 보존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사용자에게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130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3조(운영현황 통보)**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2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요청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4조(직원 교육)**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정책 수립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문보안관제센터 및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사고 대응

**제136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 영향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존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7조(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정보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위반자 및 위반내용이 포함된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대외비 등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이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8조(재발방지 조치)**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정보 협력

**제139조(정보협조 요청)** 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분

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자료제출 및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0조(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141조(정보공유시스템 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연동·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정보와 각종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활용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공유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하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통신망 구축 및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
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운영
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
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
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활용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④ 정보공유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권역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청
2.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3.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전라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42조(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관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외부공개 등급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3조(협의회 구성·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
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
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5. 정보유출 사고 시 조사·처리방안
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 제9장 보칙

**제144조(국가정보보안연합회)**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각급 기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국가정보보안연합회 및 협의기구에 참여·활동할 수 있다.

**제145조(각급 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6조(재검토 및 개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라북도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정 시행 시 자체 정보보안업무 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체 정보보안업무 규정은 개정할 수 있다.

1. 관련법 및 지침 등의 개정
2. 관련조례 및 규정 등의 개정
3.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검증필 암호모듈	
	CC인증 <sup>1)</sup>	성능평가 <sup>2)</sup>	보안기능 확인서 <sup>3)</sup>	보안적합성 검증 <sup>4)</sup>		
스마트카드		X	X	○	X	
침입차단시스템		X		X	X	
침입방지시스템		X		X	X	
통합보안관리제품		X		X	X	
웹 방화벽		X		X	X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X		X	X	
DB접근통제제품		X		X	X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 항	X		X	X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X		X	X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또는	X		X	X	
무선랜 인증제품		X		X	X	
가상사설망제품	국가용 보호프로파 일(PP) 준수	X		X	탑재 필요	
디지털복합기		X		X	X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X	국가용·일반 보안요구사항 준수	X	X	
스팸메일차단시스템		X		X	X	
패치관리시스템		X		X	X	
망간자료전송제품 <sup>5)</sup>		X		X	X	
DDoS 대응장비		X		X	X	
안티바이러스제품		X		X	X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X		X	X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X	X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X	탑재 필요
S/W기반 보안USB제품	X	X			X	탑재 필요
가상화관리제품	X	X		X	X	
네트워크 장비 <sup>6)</sup>	X	X		X	X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	X	X	X	○	X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인증(국내용 CC 또는 국제용 CC). 다만, 인증범위(TOE)에 각급기관이 사용할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의2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확인 증서
- 4) 본 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 5) 망간자료전송제품은 2022.1월부터 ‘CC인증’에서 ‘보안기능 확인서’로 도입요건이 변경됨
- 6) 네트워크 장비는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등을 의미
  - ※ 다수 H/W에 탑재, 배포되는 제품이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H/W 모델명 기재 필요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의 목록 등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고

## 【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도입 요건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구간 암호화제품		
하드웨어 보안토큰		
디스크·파일 암호화제품		
기타 암호화제품		
SSO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및 CC인증(국가용 보호프로파일 준수)	
DB 암호화제품		
문서 암호화제품(DRM 등)		

※ 최신 도입요건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암호모듈 검증) 참조

##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작성 주체
	상용 제품	자체(용역) 개발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	○	
보안기능 점검표	○	○	
운용점검사항	○	○	
CC인증서 사본	○ (인증서 보유시)		업체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	○	
기본 및 상세 설계서		○	
개발완료 보고서		○	

## 2. 재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작성 주체
	상용 제품	자체(용역) 개발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보안기능 점검표	○	○	
운용점검사항	○	○	
변경내용 분석서	○	○	업체

## 【 별표 4 】

정보시스템 자산 중요도 평가 및 보안관리

## 1. 평가 기준

분류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 (Availability)
5점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민감한 자산	변조될 경우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	서비스 중단 시 치명적 손실 및 민원발생 자산
4점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조금 민감한 자산	변조될 경우 수정이 어렵고 업무에 큰 영향을 주는 자산	서비스 중단 시 큰 손실 및 민원발생 자산
3점	필요시 내부공개 가능, 외부공개 불가 자산	변조될 경우 수정이 조금 어렵고 업무에 영향이 조금 있는 자산	서비스 중단 시 손실 및 민원 발생이 조금 있는 자산
2점	필요시 외부공개 가능 자산	변조되어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나 업무에 영향이 조금 있는 자산	서비스 중단 시 손실 및 민원 발생이 적은 자산
1점	외부공개 가능 자산	변조되어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업무에 영향이 없는 자산	서비스 중단 시 손실 및 민원 발생이 경미하거나 없는 자산

## 2. 보안 등급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점수	3~4	5~6	7~9	10~12	13~15

## 3. 정보시스템 자산 중요도 평가 현황

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명	OS (상세버전)	응용 프로그램 (상세버전)	IP	보안 등급	설치 위치	비고
								*.1.1.1 앞*처리			

## 4. 등급별 보안관리

자산유형	관리항목	등급별 보안관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PC	관리자/업무용	인터넷차단, 접근제어	인터넷차단	매체제어	비인가 매체차단	비업무 사이트차 단
서버	계정별 접근권한 적정성 (불필요 계정삭제 등)	분기별, 수시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연 1회
네트워크	정기 및 수시 점검 (접근제어 목록 등)	분기별, 수시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연 1회
보안장비	정기 및 수시 점검 (불필요 정책 삭제 등)	분기별, 수시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	반기별	연 1회
전체	취약점 점검	연 1회 점검 및 조치 / 이력관리				
	보안패치	긴급보안패치 : 즉시 / 정기보안패치 : 연 1회				

※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 별표 5 】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규정 위반사항	처분기준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대외비 포함)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구성도 등의 정보 유출</li> </ul> </li> <li>○ 정보자산에 대한 불법적 사이버 침해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에 대한 고의적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li> </ul> </li> </ul>	감사의뢰
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에 의한 정보자산의 대내·외 피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침해를 통한 장애발생 원인이 되는 직·간접적 행위</li> <li>-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 저장 정보 불법적 삭제/복사 등</li> </ul> </li> <li>○ 사이버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물 훼손 등 방해 행위</li> <li>○ 정보보안 점검 시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 발생</li> <li>○ ‘보통’ 단계의 정보보안 규정 위반사항 ‘3회 이상’ 발생</li> </ul>	(정보보안 규정 위반 심의위원회 )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보안업무 규정 규정 위반 행위(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인가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망 접속</li> <li>- ID 및 비밀번호 무단 이용</li> <li>-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li> <li>- 비 인가된 정보통신망(ADSL 등)을 무단사용</li> <li>- 네이트온, 상용메일 등 非인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li> </ul> </li> <li>○ ‘경미’ 단계의 정보보안 규정 위반사항 ‘2회 이상’ 발생</li> </ul>	경고
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보안업무 규정 규정 위반 행위(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PC, 노트북, 복합기 등)의 비밀번호 규칙위반</li> <li>-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등 미부여</li> <li>- 통제 및 제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li> <li>-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리소홀</li> <li>-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폐기시 보안절차 미준수</li> <li>- 내PC 보안점검 미실시 및 점검 후 취약점 지속사용</li> <li>- 비인가 단말기 반출입 절차 미준수</li> </ul> </li> <li>○ 정보보안 점검 시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발생</li> </ul>	주의 (시정)

## 【 별표 6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영역분리
상	파급영향	-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는 운영기관, 자산 및 개인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리적
	분류기준	- 국가 중대 이익(안보,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 등), 수사·재판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	
중	파급영향	-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는 운영기관, 자산 및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리적
	분류기준	-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하	파급영향	-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는 운영기관, 자산 및 개인에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리적 또는 논리적
	분류기준	-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 또는 운영하는 시스템	

[표]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기준 및 영역분리

※ 행정 내부업무의 경우 ‘시스템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급 조정 가능

※ 위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절차 및 체크리스트 등 세부사항은 ‘국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 이용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시 시스템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국정원은 ‘보안성 검토’시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 【 서식 제1호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명		이메일 ※ 상용메일 불가	
	도입 목적			
	보안성 검토명		계약 날짜	
			도입 날짜	
검증결과 반영	취약점 등의 개선요청 이행 ( <input type="checkbox"/> 반영·개선 <input type="checkbox"/> 반영불가)			
신청 제품	제품명		S/W(펌웨어) 버전	
		※ 신청 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제품 유형		도입 수량	대
	사전 인증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CC인증 대상 <input type="checkbox"/>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CC인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해시값 (SHA-512)	※ △해시값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S/W 사용		
	CC 인증기관		CC 인증등급	
	CC 인증번호		CC 만료일	
암호모듈명		암호검증번호	CM-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신청 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검증결과 반영'을 포함하여 기재 양식中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 【 서식 제2호 】 삭제





【 서식 제5호 】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1. 일반 사항

가. 측정 기간 및 지역

나. 측정 장비

다. 참여기관 및 인원

2. 측정 결과

기간	측정지점	통신구간	주파수 (MHz)	신호세기 (dBm)	취약여부	비고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

3. 분석 및 평가

4. 조치 및 대책













## 【 서식 제12호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일자	위치	
규모	* 상황실 면적 등	예산	* 구축예산 및 운영예산
조직 현황			
개요	* 조직구성, 인원 및 임무, 근무형태 등		
1	부서	센터장	
	직급	성명	
	이메일	연락처	전화:          HP:
2	부서	직급/직책	
	담당분야	성명	
	이메일	연락처	전화:          HP:
3	:	* 센터장과 탐지·분석·대응 등 분야별 대표자만 기입	
외부인력 현황			
업체명		대표이사	
인원수		근무형태	
계약기간		수행업무	
지침·매뉴얼 현황			
지침		기준	
매뉴얼		기타	
보안관제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 주요 기능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보안장비 현황			
F/W	* 제품명 및 사용대수	IDS/IPS	
ESM		WEB F/W	
라우터		그 밖의 장비	예) NMS 1대 * 네트워크 구성도 사본 제출
보안관제 연동기관 현황			

* 대상기관 수, 기관명, 대상목표(인터넷 또는 내부망, 홈페이지 등)					
연동기관 IP할당 현황					
1	연동기관		IP 관리 자	성 명	
	공인IP			연락처	전화:                  HP:
	사설IP			이메일	
2					
3					
4					
5					
6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탐지규칙 재배포 현황					
	기관명	재배포방법		기관명	재배포방법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6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7.  
전라북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km)
기정	지방도	740호	여산 ~ 운주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일원	103,940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759-4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68-2	-	2.96
변경					105,069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산~경천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한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1. ~ 2024.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공항공정(063-280-4404)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40호	노선명	여산~운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i> <li>○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점 :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759-4번지</li> <li>- 종점 :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68-2번지</li> </ul> </li> </ul>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li> <li>○ 교통사고 위험방지</li> </ul>				
비고					

3.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라북도(도로공항철도과)에서 열람 가능

## 【 불 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면	리					성 명	주 소
합 계					105,108	105,069		
1	화산	성북	15-1	전	23	23	전라북도	
2	화산	성북	15-2	전	48	48	전라북도	
3	화산	성북	16-1	답	354	354	전라북도	
4	화산	성북	17-1	답	1,384	1,384	전라북도	
5	화산	성북	19-8	답	2,109	2,109	전라북도	
6	화산	성북	19-9	도	97	97	전라북도	
7	화산	성북	19-10	대	56	56	전라북도	
8	화산	성북	19-11	도	47	47	전라북도	
9	화산	성북	21-4	답	731	731	전라북도	
10	화산	성북	21-5	도	192	192	전라북도	
11	화산	성북	21-7	답	487	487	전라북도	
12	화산	성북	22-1	도	7	7	전라북도	
13	화산	성북	22-3	임	22	22	전라북도	
14	화산	성북	22-4	임	71	71	전라북도	
15	화산	성북	25-1	전	2,220	2,220	전라북도	
16	화산	성북	25-3	전	33	33	임석봉	완주군 화산면 종리 481-1
17	화산	성북	27-1	답	1,416	1,416	전라북도	
18	화산	성북	28-3	답	7	7	전라북도	
19	화산	성북	31-3	유	155	15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0	화산	성북	33-3	도	56	56	전라북도	
21	화산	성북	33-4	천	17	17	전라북도	
22	화산	성북	34-1	천	20	20	전라북도	
23	화산	성북	34-2	도	53	53	전라북도	
24	화산	성북	34-5	전	34	34	전라북도	
25	화산	성북	35-1	전	288	288	전라북도	
26	화산	성북	35-2	도	179	179	전라북도	
27	화산	성북	35-4	전	327	327	전라북도	
28	화산	성북	43-8	대	64	64	전라북도	
29	화산	성북	43-9	전	1,461	1,461	전라북도	
30	화산	성북	44-5	도	128	128	전라북도	
31	화산	성북	60-1	임	478	478	전라북도	
32	화산	성북	61-1	답	1,405	1,405	전라북도	
33	화산	성북	62-1	임	539	539	전라북도	
34	화산	성북	63-3	임	17	17	전라북도	
35	화산	성북	65-1	도	42	42	전라북도	
36	화산	성북	164-1	유	334	334	국(농림수산부)	
37	화산	성북	164-2	유	16	16	국(농림수산부)	
38	화산	성북	203-7	답	3,954	3,954	전라북도	
39	화산	성북	203-10	답	7	7	전라북도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면	리					성 명	주 소
40	화산	성북	203-11	중	147	147	전라북도	
41	화산	성북	203-13	대	220	220	전라북도	
42	화산	성북	203-14	전	725	725	전라북도	
43	화산	성북	213-5	답	806	806	전라북도	
44	화산	성북	216-11	전	2	2	전라북도	
45	화산	성북	216-12	전	611	611	전라북도	
46	화산	성북	216-14	과	1,674	1,674	전라북도	
47	화산	성북	217-4	답	349	349	전라북도	
48	화산	성북	218-5	도	4	4	전라북도	
49	화산	성북	218-6	답	386	386	전라북도	
50	화산	성북	218-8	도	24	24	전라북도	
51	화산	성북	228-2	전	1,505	1,505	전라북도	
52	화산	성북	228-5	전	9	9	전라북도	
53	화산	성북	746-3	도	88	88	완주군	
54	화산	성북	758-3	도	53	53	완주군	
55	화산	성북	758-7	도	671	671	완주군	
56	화산	성북	758-8	도	75	75	완주군	
57	화산	성북	758-10	도	89	89	완주군	
58	화산	성북	758-12	도	3	3	완주군	
59	화산	성북	759-5	도	18	18	전라북도	
60	화산	성북	759-6	전	358	358	전라북도	
61	화산	성북	759-7	도	663	663	완주군	
62	화산	성북	759-8	전	27	27	전라북도	
63	화산	성북	760-5	도	24	24	전라북도	
64	화산	성북	760-6	전	1,249	1,249	전라북도	
65	화산	성북	761-3	전	379	379	전라북도	
66	화산	성북	762-4	전	90	90	전라북도	
67	화산	성북	766-5	전	773	773	전라북도	
68	화산	성북	768-23	전	104	104	전라북도	
69	화산	성북	768-24	전	229	229	전라북도	
70	화산	성북	771-1	전	26	26	전라북도	
71	화산	성북	773-4	답	1,759	1,759	전라북도	
72	화산	성북	774-5	전	1	1	전라북도	
73	화산	성북	787-3	천	330	330	전라북도	
74	화산	성북	787-5	천	1	1	전라북도	
75	화산	성북	787-6	유	4	4	전라북도	
76	화산	성북	788-1	전	678	678	전라북도	
77	화산	성북	1242-3	구	6	6	국(농림수산부)	
78	화산	성북	1242-4	구	72	72	국(농림수산부)	
79	화산	성북	1242-6	구	344	344	국(농림수산부)	
80	화산	성북	1242-7	구	88	88	국(농림수산부)	
81	화산	성북	1242-8	구	9	9	국(농림수산부)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면	리					성 명	주 소
82	화산	성북	1242-9	구	29	29	국(농림수산부)	
83	화산	성북	1242-10	구	75	75	국(농림수산부)	
84	화산	성북	1242-12	구	164	164	국(농림수산부)	
85	화산	성북	1247-1	구	126	126	국(농림수산부)	
86	화산	성북	1247-3	구	16	16	국(농림수산부)	
87	화산	성북	산61-3	임	4,495	4,495	전라북도	
88	화산	성북	산61-5	임	225	225	전라북도	
89	화산	성북	산61-6	임	8	8	전라북도	
90	화산	성북	산61-7	임	4,067	4,067	전라북도	
91	화산	성북	산65-19	임	956	956	전라북도	
92	화산	성북	산65-20	도	403	403	전라북도	
93	화산	성북	산65-21	임	5,784	5,753	전라북도	
94	화산	성북	산65-22	도	7	7	전라북도	
95	화산	성북	산65-23	도	117	117	전라북도	
96	화산	성북	산65-25	도	318	318	전라북도	
97	화산	성북	산65-27	도	513	513	전라북도	
98	화산	성북	산65-29	도	141	141	전라북도	
99	화산	성북	산65-30	임	90	90	전라북도	
100	화산	성북	산65-31	임	45	45	전라북도	
101	화산	성북	산65-32	임	1,913	1,913	전라북도	
102	화산	성북	산65-33	임	523	523	전라북도	
103	화산	성북	산65-34	임	8,937	8,937	전라북도	
104	화산	성북	산65-36	임	2,751	2,751	전라북도	
105	화산	성북	산65-38	임	727	727	전라북도	
106	화산	성북	산65-39	임	1,130	1,130	전라북도	
107	화산	성북	산65-41	임	654	654	전라북도	
108	화산	성북	산67-6	임	147	147	전라북도	
109	화산	성북	산67-7	임	33	33	전라북도	
110	화산	성북	산67-8	도	107	107	전라북도	
111	화산	성북	산67-9	도	45	45	전라북도	
112	화산	성북	산67-10	임	1,555	1,555	전라북도	
113	화산	성북	산68-7	임	681	681	전라북도	
114	화산	성북	산68-8	임	2	2	전라북도	
115	화산	성북	산68-9	도	707	707	전라북도	
116	화산	성북	산68-13	임	123	123	전라북도	
117	화산	성북	산68-14	임	35	35	전라북도	
118	화산	성북	산68-15	임	164	164	전라북도	
119	화산	성북	산68-16	임	55	55	전라북도	
120	화산	성북	산68-18	임	754	754	전라북도	
121	화산	성북	산68-19	임	3,110	3,110	전라북도	
122	화산	성북	산73-11	임	25	25	전라북도	
123	화산	성북	산73-12	임	5,085	5,085	전라북도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면	리					성 명	주 소
124	화산	성북	산73-15	도	47	47	전라북도	
125	화산	성북	산78-1	임	3,342	3,342	전라북도	
126	화산	성북	산78-3	임	161	161	김덕기 외 1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동로 17, 103동2204호(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127	화산	성북	산79-7	임	2,094	2,094	전라북도	
128	화산	성북	산79-9	임	121	121	전라북도	
129	화산	성북	산80-6	임	4,392	4,392	전라북도	
130	화산	성북	산82-22	도	671	671	전라북도	
131	화산	성북	산82-24	도	82	80	전라북도	
132	화산	성북	산82-25	임	2,152	2,152	전라북도	
133	화산	성북	산82-27	임	1,799	1,799	전라북도	
134	화산	성북	산82-28	임	7,855	7,855	전라북도	
135	화산	성북	산82-30	임	416	416	김기용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10
136	화산	성북	산85-8	임	5	5	전라북도	
137	화산	성북	산86-3	도	47	41.4	전라북도	
138	화산	성북	산88-6	도	14	14	전라북도	
139	화산	성북	산88-7	도	260	260	전라북도	
140	화산	성북	산88-9	임	1,257	1,257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7호

## 하장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2019년 가을착수 ~ 2020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준공한 하장 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환지면적 등 환지계획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수립한 환지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하장 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치 : 부안군 동진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지의 규모화, 농로 정비, 효율적인 용배수로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4. 수혜면적 : 80ha
5. 사업량 : 농지 구획정리, 용수로 33,969m, 배수로 4,133m 등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6. 사업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9월
7. 총사업비 : 2,048백만원
8. 종전토지 : 토지소유자 142명, 면적 777,251㎡ (변경없음)
9. 환지계획 : (당초) 소유자 140명, 면적 775,953.1㎡  
(변경) 소유자 137명, 면적 775,952.6㎡
10. 환지청산금 : (당초) 139,002,670원, (변경) 137,462,620원
11. 환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수립한 환지계획서(변경) 및 확정도(변경)와 같음
12. 환지내용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 063-580-1058)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8호

### 창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시행한 창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사 업 명 : 창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금마면 동고도리, 서고도리 일원
- 3. 사 업 목 적 :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기계화영농 등
- 4. 수 혜 면 적 : 수혜면적 90.0ha
- 5. 사 업 개 요
  - 용수로 20조 4,055m. 배수로 13조 2,306m
- 6. 사업 기간 : 2021.12. ~ 2022.12..(2개년)
- 7. 사 업 비 : 2,132백만원
-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전화 063-860-0086)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79호

## 삼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시행한 삼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 업 명 : 삼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두리, 정읍시 감곡면 용곽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경지이용률 증대, 농가소득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01ha
5. 사 업 개 요
  - 용 수 로 : 개 거 4조 4,304m
  - 배 수 로 : 수로관 5조 4,021m
6. 사업 기간 : 2021. 12. ~ 2022. 12. (2개년)
7. 사 업 비 : 2,58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전화 063-540-1176)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0호

### 삼평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시행한 삼평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 업 명 : 삼평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신두리, 용성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경지이용률 증대, 농가소득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22ha
5. 사 업 개 요
  - 용 수 로 : 개 거 13조 6,102m
  - 배 수 로 : 수로관 7조 2,920m
6. 사업 기간 : 2021. 12. ~ 2022. 12.. (2개년)
7. 총 사업비 : 2,87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전화063-540-1176)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1호

### 삼평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시행한 삼평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 업 명 : 삼평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신두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경지이용률 증대, 농가소득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78ha
5. 사 업 개 요
  - 용 수 로 : 개 거 9조 3,223m
  - 배 수 로 : 수로관 8조 3,142m
6. 사업 기간 : 2021. 12. ~ 2022. 12.. (2개년)
7. 총 사업비 : 1,82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기 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전화 063-540-1176)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2호

### 죽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시행한 죽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죽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곡리 외2개리 일원
3. 수혜면적 : 262.6ha
4. 사업비 : 2,728백만원
5. 사업기간 : 2021. 10. 01. ~ 2022. 12. 23.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죽곡저수지)
    - 여수토 :  $H \times L = 0.85m \times 7.0m$ (배제량 :  $11.94m^3/s$ )
    - 방수로 :  $B \times L = 4.0m \times 116.7m$
    - 취수시설 : 사통  $D0.3m \times 2$ 공, 복통  $D0.9m \times 57.4m$
  - 나. 수원공(구림저수지)
    - 취수시설 : 복통  $D0.9m \times 65m$
  - 다.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TEL 063-650-7073)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3호

## 동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시행한 동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동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장리 외5개리 일원
3. 수혜면적 : 157.4ha
4. 사업비 : 3,816백만원
5. 사업기간 : 2020. 01. 21.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24조 7.503km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TEL 063-650-7073)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4호

### 동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시행한 동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동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수장리 일원
3. 수혜면적 : 58.0ha
4. 사업비 : 2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22. 10. 07. ~ 2022. 12. 1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 : 저수지(난계) 준설 11,294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TEL 063-650-7073)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5호

## 우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시행한 우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우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하서면, 줄포면, 주산면, 계화면 일원
3. 수혜면적 : 228.8ha
4. 사업비 : 3,736백만원
5. 사업기간 : 2019. 12. 16. ~ 2022. 12. 26.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11조 8,207m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TEL 063-580-1040)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6호

## 연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TEL 063-580-1040)에 시행한 연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연중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일원
3. 수혜면적 : 20ha
4. 사업비 : 15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9. 12. 16. ~ 2022. 12. 26.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연중제) : 저수지 준설 10,860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TEL 063-580-1040)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7호

## 우치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시행한 우치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우치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대야면, 개정면, 임피면 일원
3. 수혜면적 : 2,020ha
4. 사업비 : 5,054백만원
5. 사업기간 : 2020. 6. 5. ~ 2022. 12. 1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우치산양수장) :  $\Phi 400 \times 37w \times 1$ 대,  $\Phi 300 \times 15kw \times 1$ 대
  - 나. 수원공(신오산양수장) :  $\Phi 500 \times 37w \times 9$ 대
  - 다. 수원공(술산양수장) :  $\Phi 400 \times 45w \times 3$ 대
  - 라. 수원공(내덕양수장) :  $\Phi 350 \times 19w \times 1$ 대
  - 마. 수원공(개정양수장) :  $\Phi 300 \times 11w \times 1$ 대
  - 바. 수원공(축산제) : 비상수문 B×H×런=3.0m×0.7m×1런
  - 사. 수원공(부곡제) : 비상수문 B×H×런=3.0m×0.8m×1런
  - 아.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TEL 063-440-5826)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8호

### 백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시행한 백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백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군산시 지곡동, 옥구읍, 옥산면 일원
3. 수혜면적 : 320ha
4. 사업비 : 4,420백만원
5. 사업기간 : 2021. 8. 2.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백석양수장)
    - $\Phi 400 \times 37w \times 1$ 대
    - 인수로  $B \times H \times L = 2.5 \times 1.8 \times 720m$
  - 나. 수원공(선제하양수장) :  $\Phi 350 \times 22w \times 1$ 대
  - 다. 수원공(지곡양수장) :  $\Phi 600 \times 37w \times 1$ 대
  - 라. 평야부 : 용배수로 1조  $B \times H \times L = 5.0 \times 1.5 \times 660m$
  - 마.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TEL 063-440-5826)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89호

### 장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시행한 장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사업명 : 장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위치 : 전북 군산시 개정동, 산북동, 서수면, 대야면 일원
- 3. 수혜면적 : 371.8ha
- 4. 사업비 : 3,718백만원
- 5. 사업기간 : 2019. 11. 28. ~ 2022. 12. 20.
-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수로 8조 6,866m
  - 나. 부대공사 1식
-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TEL 063-440-5826)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0호

## 전라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전라북도지사

### 1. 위탁업무 및 수행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도곡동)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문분야의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계획·조사·설계 포함”에 한함)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의 업무에 한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 2. 행정사항

-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 등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전라북도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 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받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2호

## 교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교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교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황등면, 삼기면, 여산면, 오산면 일원
3. 수혜면적 : 695ha
4. 사업비 : 5,924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0. 05. 11. ~ 2022. 12. 29.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교향양수장) :  $\Phi 300 \times 30w \times 2$ 대
  - 나. 수원공(요교제수문) :  $B \times H \times \text{런} = 10.0 \times 3.0 \times 4$ 런
  - 다. 수원공(삼기1취입보) : 가동보  $B \times H \times \text{런} = 20.0 \times 1.6 \times 1$ 런
  - 라. 수원공(장후배수로 교량) :  $B \times H \times L \times \text{런} = 6.3m \times 5.0m \times 37.3m \times 3$ 런
  - 마. 수원공(학동제) : 비상수문  $B \times H \times \text{런} = 4.0m \times 1.2m \times 1$ 런
  - 바.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TEL 063-860-0075)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3호

## 봉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봉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봉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낭산면, 함라면 일원
3. 수혜면적 : 654ha
4. 사업비 : 4,661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1. 04. 07. ~ 2022. 12. 29.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봉동배수장) : 기계실 보수 1식, 토출관 재설치 L=36m
  - 나. 수원공(내촌배수장) : 기계실 보수 1식, 펌프 보수  $\Phi$ 1,200×3대
  - 다. 수원공(오산갑문) : 구조물 보수 1식, 수문교체 B×H×런=2.4m×2.8m×3런
  - 라. 수원공(방축제수문) : 구조물 보수 1식, 수문교체 B×H×런=3.4m×1.2m×2런
  - 마. 수원공(수통계제수문) : 구조물 보수 1식, 수문교체 B×H×런=3.5m×2.5m×2런
  - 바.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TEL 063-860-0073)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4호

## 덕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덕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덕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죽림리, 덕정리 일원
3. 수혜면적 : 545ha
4. 사업비 : 3,886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19. 12. 20.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33조 9,686m
  - 나. 부대공사 1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TEL 063-560-154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5호

###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사업명 :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위치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원
- 3. 수혜면적 : 300ha
- 4. 사업비 : 3,837백만원 (재원 : 국고 100%)
- 5. 사업기간 : 2019. 10. 28. ~ 2022. 12. 27.
-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21조 9,071m
  - 나. 부대공사 1석
-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TEL 063-540-1153)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6호

## 금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금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금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일원
3. 수혜면적 : 1,000.3ha
4. 사업비 : 9,287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19. 12. 10.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금평저수지)
    - 전도수문 : 12m×3.58m 1련(신설), 3.8m×3.58m 1련(고정보 대체)
    - 여수로 : B=42.0~58.0m, H=7.1~10.0m, L=111.5m
    - 모악로 여유고 확보 옹벽 : L×H=34.0m×0.5m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TEL 063-540-1157)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7호

### 백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백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백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공덕면, 백산면 일원
3. 수혜면적 : 576ha
4. 사업비 : 5,164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1. 07. 02. ~ 2022. 12. 26.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동자포배수장)
    - 흡입수조 B×H×L=3.2×2.5×3.6m
    - 인입수로 B×H×L=3.0×1.5×430m
    - 400mm×18.5kW×2대, 수배전반 및 TM/TC 1식, 전기실 1식
  - 나. 수원공(유정제수문) : 재설치 B×H×런=2.0m×2.0m×1런
  - 다. 수원공(백산저수지) : 여방수로 B×H×L=6.0×3.0~7.0×27m
  - 라. 평야부 : 용배수로 2조 1,852m
  - 마.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TEL 063-540-1155)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8호

## 벽골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벽골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벽골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일원
3. 수혜면적 : 20,500ha
4. 사업비 : 20,868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17. 02. 24.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용성양수장)
    - 55kw×2대, 송수관로 D800mm×924m
  - 나. 평야부
    - 김제간선 : 22.0m×2.3m×2,961m
    - 연결수로 : 1.5m×1.0m×801m
  - 다.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TEL 063-540-1153)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199호

### 무풍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무풍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무풍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일원
3. 수혜면적 : 160.5ha
4. 사업비 : 80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2. 10. 19. ~ 2022. 12. 1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무풍제) : 저수지 준설 5,062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TEL 063-350-705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0호

### 사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사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사업명 : 사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위치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일원
- 3. 수혜면적 : 129ha
- 4. 사업비 : 80백만원 (재원 : 국고 100%)
- 5. 사업기간 : 2022. 10. 19. ~ 2022. 12. 10.
-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사계제, 쌍용제) : 저수지 준설 4,794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TEL 063-350-705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1호

### 산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산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산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일원
3. 수혜면적 : 788ha
4. 사업비 : 3,783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0. 02. 19. ~ 2022. 12. 1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20조 7,150m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TEL 063-350-705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2호

## 만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만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만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일원
3. 수혜면적 : 30.7ha
4. 사업비 : 30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2. 10. 24. ~ 2022. 11. 3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 : 저수지(만촌) 준설 1,721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TEL 063-620-207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3호

### 용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용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용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일원
3. 수혜면적 : 12.5ha
4. 사업비 : 40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2. 10. 21.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 : 저수지(용산) 준설 2,277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TEL 063-620-207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4호

## 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이백면, 금지면 일원
3. 수혜면적 : 568.0ha
4. 사업비 : 3,731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19. 11. 19. ~ 2022. 12. 28.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15조 7.668km
  - 나. 부대공사 1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TEL 063-620-207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5호

### 점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점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점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일원
3. 수혜면적 : 5.0ha
4. 사업비 : 40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2. 10. 24. ~ 2022. 11. 3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 : 저수지(점촌) 준설 3,603m<sup>3</sup>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TEL 063-620-207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6호

## 삼유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삼유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하천 연장 (km)	결정 (변경)일
			기 점				종 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당초	삼유천	지방	전북	무주	적상	삼유리 1702번지선	전북	무주	무주	용포리 금강(국가)합류점	13.7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무주	적상	삼유리 1470-4번지선	전북	무주	무주	용포리 500-1번지선 금강(국가)합류점	12.70	2023.07.07

## 2. 지정(변경) 사유

-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의 지정 변경(일부구간 지정 해제)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7호

## 삼유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수립한 「삼유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금 강	삼유천	지방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702번지선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금강(국가) 합류점	13.7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금강(국가) 합류점	13.00	전라북도 고시 제2008-394호 (2008.12.05.)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470-4번지선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500-1번지선 금강(국가) 합류점	12.70	재수립

###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sup>2</sup> )	수자원 총량 (백만 m <sup>3</sup> )	기 준 갈수량 (m <sup>3</sup> /s)	저수량 (m <sup>3</sup> /s)	유출량(백만 m <sup>3</sup> )			손실량 (백만 m <sup>3</sup> )
					홍수기	평상시	계	
삼유천	34.90	46.66	0.0870	0.0466	20.37	6.85	27.22	19.44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삼유천	12.70	12.70	-	25.40	3.14	13.31	8.95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sup>2</sup>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sup>3</sup> /s)	계획홍수량 (m <sup>3</sup>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sup>3</sup>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삼유천	삼유천 종점 (No.0+000)	34.90	80	379	380	-	-
	절골천(소) 합류전 (No.2+150)	32.45	80	379	380	-	-
	내동천 합류후 (No.4+550)	29.76	80	379	380	-	-
	내동천 합류전 (No.4+550)	23.26	80	291	295	-	-
	거사동천(소) 합류전 (No.5+950)	19.03	80	246	250	-	-
	고방잠수교 지점 (No.7+450)	14.30	80	179	180	-	-
	하비교 지점 (No.9+088)	11.60	80	144	145	-	-
	무명천 합류후 (No.11+008)	8.66	80	110	110	-	-
	무명천 합류전 (No.11+008)	3.56	80	42	42	-	-
	삼유천 시점 (No.12+695)	2.20	80	42	42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sup>3</sup>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삼유천	0+000	0	380	178.96	80	43	-	176.51	177.66	삼유천 종점
	2+150	2,150	380	207.97	80	34	-	산	산	절골천(소) 합류전
	4+550	4,550	295	244.56	80	30	32	245.82	244.78	내동천 합류전
	5+950	5,950	250	263.75	80	26	31	263.83	263.18	거사동천(소) 합류전
	7+450	7,450	180	282.21	80	19	25	280.73	280.73	고방잠수교 지점
	9+088	9,088	145	305.83	80	18	25	306.52	305.72	하비교 지점
	11+008	11,008	42	339.52	80	14	15	340.04	341.24	무명천 합류전
	12+695	12,695	42	392.77	80	16	-	397.09	395.25	삼유천 시점

##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sup>2</sup> )
삼유천	0+000~1+350	좌안	복원지구	1,350	31,881
	1+350~2+108	좌안	보전지구	758	18,698
	2+108~12+695	좌안	복원지구	10,587	197,233
	0+000~1+200	우안	복원지구	1,200	31,663
	1+200~2+108	우안	보전지구	908	19,216
	2+108~12+695	우안	복원지구	10,587	194,758

##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무주군청 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8호

## 삼유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물통합관리과), 무주군청(환경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삼유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3. 7. 7.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삼유천	38개 지구 (좌안 - 19개 지구, 우안 - 19개 지구)		25.390	493,449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58번지선 (No.0+586)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57-1번지선 (No.0+000)	0.586	15,55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745번지선 (No.0+96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58번지선 (No.0+586)	0.375	8,51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 69-3번지선 (No.2+81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745번지선 (No.0+961)	1.854	37,73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20번지선 (No.4+258)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 69-3번지선 (No.2+815)	1.443	33,31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25-1번지선 (No.4+51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20번지선 (No.4+258)	0.258	5,64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52번지선 (No.5+079)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25-1번지선 (No.4+516)	0.563	6,94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48-1번지선 (No.5+37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52번지선 (No.5+079)	0.297	6,6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0-2번지선 (No.6+244)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48-1번지선 (No.5+376)	0.868	19,91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1-2번지선 (No.6+66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0-2번지선 (No.6+244)	0.422	11,06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998번지선 (No.6+86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1-2번지선 (No.6+666)	0.200	2,591	기본계획 재수립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삼유천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59-1번지선 (No.7+699)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998번지선 (No.6+866)	0.833	19,58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 158-2번지선 (No.8+39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59-1번지선 (No.7+699)	0.697	13,11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 158-3번지선 (No.8+452)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158-2번지선 (No.8+396)	0.056	68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65-2번지선 (No.10+017)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 158-3번지선 (No.8+452)	1.565	27,80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132-2번지선 (No.10+180)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65-2번지선 (No.10+017)	0.163	2,0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889-3번지선 (No.10+499)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산 132-2번지선 (No.10+180)	0.319	4,79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939-1번지선 (No.10+921)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889-3번지선 (No.10+499)	0.422	5,37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304-5번지선 (No.12+234)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939-1번지선 (No.10+921)	1.313	25,69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296-1번지선 (No.12+695)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304-5번지선 (No.12+234)	0.461	804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12.695	247,813	19개 지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683-1번지선 (No.0+83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489-5번지선 (No.0+000)	0.835	19,59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 71-1번지선 (No.2+662)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683-1번지선 (No.0+835)	1.827	40,72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328번지선 (No.2+82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 71-1번지선 (No.2+662)	0.165	5,89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90-1번지선 (No.3+258)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328번지선 (No.2+827)	0.431	9,84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32-1번지선 (No.4+464)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90-1번지선 (No.3+258)	1.206	20,41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5번지선 (No.5+246)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32-1번지선 (No.4+464)	0.782	17,844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1번지선 (No.5+729)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5번지선 (No.5+246)	0.483	11,5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0-5번지선 (No.6+332)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1번지선 (No.5+729)	0.603	14,84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0-5번지선 (No.6+433)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0-5번지선 (No.6+332)	0.101	85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4-5번지선 (No.6+938)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30-5번지선 (No.6+433)	0.505	12,76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174-5번지선 (No.7+007)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24-5번지선 (No.6+938)	0.069	72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803번지선 (No.8+659)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174-5번지선 (No.7+007)	1.652	31,19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723번지선 (No.9+409)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803번지선 (No.8+659)	0.750	16,53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549번지선 (No.9+560)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723번지선 (No.9+409)	0.151	2,820	기본계획 재수립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삼유천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71-3번지선 (No.10+010)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549번지선 (No.9+560)	0.450	12,78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76-1번지선 (No.10+241)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71-3번지선 (No.10+010)	0.231	3,95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911번지선 (No.10+529)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476-1번지선 (No.10+241)	0.288	6,25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917-7번지선 (No.10+989)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911번지선 (No.10+529)	0.460	6,69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470-4번지선 (No.12+695)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917-7번지선 (No.10+989)	1.706	10,341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12.695	245,636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209호

**삼유천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삼유천 지방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공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전라북도(물통합관리과), 무주군청(환경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삼유천 지방하천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2023. 7. 7.
3. 폐천부지의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64번지 등 84필지
4. 폐천부지의 종류 및 면적

하천명	지목	구분	계	관리계획	발생사유
삼유천	계	필지수(EA)	84		
		폐천면적(m <sup>2</sup> )	30,405		
	천	필지수(EA)	10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 <sup>2</sup> )	20,277		
	구	필지수(EA)	6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 <sup>2</sup> )	199		
	도	필지수(EA)	30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 <sup>2</sup> )	3,698		
	전	필지수(EA)	4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 <sup>2</sup> )	296		

하천명	지목	구분	계	관리계획	발생사유
삼유천	답	필지수(EA)	11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1,540		
	대	필지수(EA)	2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53		
	임	필지수(EA)	11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2,016		
	체	필지수(EA)	1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9		
	장	필지수(EA)	6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1,429		
	유	필지수(EA)	3	보 전	하천구역 결정에 제외된 토지
		편입면적(m2)	888		

- 첨부 열람서류 : 1. 폐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폐천구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0호

### 삼례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삼례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 1. 사업명 : 삼례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외3개리 일원
- 3. 수혜면적 : 1,262ha
- 4. 사업비 : 3,901백만원 (재원 : 국고 100%)
- 5. 사업기간 : 2020. 03. 06. ~ 2022. 12. 20.
-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6조 3,843m
  - 나. 부대공사 1식
-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TEL 063-270-0542)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1호

## 북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북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북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정읍시 신정동, 이평면, 덕천면, 북면 일원
3. 수혜면적 : 14,331ha
4. 사업비 : 3,919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0. 05. 06. ~ 2022. 12. 26.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북창제) : 기초처리 159공, 비상수문 1식
  - 나. 수원공(장문양수장) : 수중펌프교체, 흡입수조 1식, 송수관로 L=500m
  - 다. 수원공(세곡양수장) : 수중펌프교체, 흡입수조 1식, 송수관로 L=100m
  - 라. 평야부 : 도수로 1조 B×H×L=6.4m×2.7m×370m
  - 마.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TEL 063-530-030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2호

## 하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하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하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고부면, 감곡면 일원
3. 수혜면적 : 2,809ha
4. 사업비 : 7,654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1. 07. 08.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하입석양배수장)
    - $\Phi 1,100 \times 110w \times 5$ 대
    - 건축물 철거 1식
    - 흡입수조, 수배전반, 전기실 설치 1식
  - 나. 수원공(백운양수장)
    - $\Phi 500 \times 37w \times 1$ 대
    - 건축물 철거 1식
    - 흡입수조, 수배전반 설치 1식
  - 다. 수원공(상평, 하평, 신태인 배수장) : 비상전원설치 각 1식
  - 라.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TEL 063-530-030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3호

## 일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일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일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정읍시 용동면 오성리 일원
3. 수혜면적 : 10ha
4. 사업비 : 1,877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21. 04. 05. ~ 2022. 12. 20.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수원공(일리지)
    - 제체 승상 H=0.7m L=320m, 제당 그라우팅 232공, 내제 사석보강 1,196m<sup>3</sup>
    - 준설 17,556.9m<sup>3</sup>
    - 물넘이 H=0.5m L=5.0m, 방수로 5.0m L=4.5m
    - 사통 D=0.4m 1공, 복통 D=0.8m L=15.0m
  - 나. 부대공사 1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TEL 063-530-030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4호

## 고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고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사업명 : 고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소성면, 이평면, 영원면 일원
3. 수혜면적 : 500ha
4. 사업비 : 3,845백만원 (재원 : 국고 100%)
5. 사업기간 : 2019. 12. 02. ~ 2022. 12. 28.
6.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7. 시설규모
  - 가. 평야부 : 용배수로 10조 7,530m
  - 나. 부대공사 1석
8. 기타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TEL 063-530-0306)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15호

## 모악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모악산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지사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모악산도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변경 없음
  - 가. 총괄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k㎡)	비고
공원구역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43.309	

### 나. 시군별 세부면적 조서

행정구역	시군별 면적	비고
계	43.309	
전주시	5.609	
김제시	29.143	
완주군	8.55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 가. 총괄

구 분	면 적(k㎡)	
합 계	43.309	
공원자연보존지구	0.094	
공원자연환경지구	40.280	
공원마을지구	소 계	2.613
	구.공원자연마을지구	2.208
	구.공원집단시설지구	0.405
공원문화유산지구	0.322	

## 나. 시군별 세부 면적 조서

구 분		면 적(km <sup>2</sup> )	
총 계		43.309	
공원자연보존지구		0.094	
공원자연환경지구		40.280	
공원마을지구	소계	2.613	
	구.공원자연마을지구	2.208	
	구.공원집단시설지구	0.405	
공원문화유산지구		0.322	
전주시	소계	5.609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5.609	
	공원마을지구	계	-
		구.공원자연마을지구	-
		구.공원집단시설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		
김제시	소계	29.143	
	공원자연보존지구	0.094	
	공원자연환경지구	26.312	
	공원마을지구	계	2.547
		구.공원자연마을지구	2.142
		구.공원집단시설지구	0.405
공원문화유산지구	0.190		
완주군	소계	8.557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8.359	
	공원마을지구	계	0.066
		구.공원자연마을지구	0.066
		구.공원집단시설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0.132		

## 5.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김제시)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404,542	404,542	-	
상업시설지	10,343	10,343	-	
숙박시설지	21,807	21,807	-	
공공시설지	10,697	10,697	-	
기타시설지	<b>172,581</b>	<b>176,916</b>	<b>증 4,335</b>	
유 보 지	26,652	26,652	-	
녹 지	<b>162,462</b>	<b>158,127</b>	<b>감 4,335</b>	

## 나. 세부시설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부지 면적	동수	건 축 연면적	부지 면적	동수	건 축 연면적	부지 면적	동수	건 축 연면적	
계	404,542	35	48,921.06	404,542	36	49,766.97	-	증 1	증 845.91	
상업시설지	10,343	8	4,642.65	10,343	8	4,642.65				
상 가	10,343	8	4,642.65	10,343	8	4,642.65	-	-	-	
숙박시설지	21,807	4	39,316.02	21,807	4	39,316.02	-	-	-	
관광호텔	17,177	1	35,536.26	17,177	1	35,536.26	-	-	-	
유스호스텔	4,630	3	3,779.76	4,630	3	3,779.76	-	-	-	
공공시설지	10,697	4	587.64	10,697	4	587.64	-	-	-	
매 표 소		1	33.00		1	33.00	-	-	-	
한국통신 금산분기소	8,197	1	43.91	8,197	1	43.91	-	-	-	
우 체 국		1	143.19		1	143.19	-	-	-	
관리사무소	2,500	1	367.54	2,500	1	367.54	-	-	-	
<b>기타시설지</b>	<b>172,581</b>	<b>19</b>	<b>4,374.75</b>	<b>176,916</b>	<b>20</b>	<b>5,220.66</b>	<b>증 4,335</b>	<b>증 1</b>	<b>증 845.91</b>	
주 차 장	40,086	6	499.05	40,086	6	499.05	-	-	-	
야 영 장	16,980	7	688.00	16,980	7	688.00	-	-	-	
어린이놀이터	13,248	-	-	13,248	-	-	-	-	-	
운동시설	12,514	2	390.00	12,514	2	390.00	-	-	-	
조경휴게지	25,631	2	149.70	25,631	2	149.70	-	-	-	
도 로	29,197	-	-	29,197	-	-	-	-	-	
하 천	25,101	-	-	25,101	-	-	-	-	-	
청소년수련지	9,436	1	2,595.00	9,436	1	2,595.00	-	-	-	
화 장 실	388	1	53.00	388	1	53.00	-	-	-	
금산사 사찰 문화자료 관리시설	-	-	-	4,335	1	845.91	증 4,335	증 1	증 845.91	신설
유 보 지	26,652	-	-	26,652	-	-	-	-	-	
<b>녹 지</b>	<b>162,462</b>	<b>-</b>	<b>-</b>	<b>158,127</b>	<b>-</b>	<b>-</b>	<b>감 4,335</b>	<b>-</b>	<b>-</b>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내 도로망 조서 : 변경 없음

종류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시 점	종 점	비고
계			2,795	29,197			
대로 3	1	25	54	1,279	금산리 493도 유보지	금산리 204-2도 주차장	
중로 3	1	12	307	3,648	금산리 128-7전 주차장	금산리 79원 연결도로	
중로 3	2	12	60	733	금산리 122-3도 공간 연결도로	금산리 79원 연결도로	
소로 1	1	10	392	4,921	금산리 136-2도 주차장	금산리 111-1대 공공시설지	
소로 2	1	8	121	919	금산리 126-1도 도로	금산리 138-10도 도로	
소로 2	2	8	333	5,737	금산리 79원 상업시설지	금산리 79원 운동시설지	
소로 3	1	6	521	4,333	금산리 95-2답 공공시설지	금산리 102-4도 도로	
소로 3	2	5	865	6,714	금산리 493도 유보지	금산리 23-1대 도로	
소로 3	3	6	53	342	금산리 122-7도 도로	금산리 143-14도 도로	
소로 3	4	6	35	221	금산리 145-1도 도로	금산리 142-12도 도로	
소로 3	5	6	54	350	금산리 150-1도 도로	금산리 145-2도 도로	

6.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가. 교통·운수시설 계획

(1) 진입도로

노선번호	구 간		도 로		비 고
	시 점	종 점	연 장(m)	폭 원(m)	
합 계			10,254		
1	용 화 동	청 도 리 간	5,000	10	
2	원 평	용 화 마 을 입 구	1,395	10	
3	용 화 마 을 입 구	집 단 시 설 지 구	1,100	8	
4	용 화 마 을 입 구	집 단 시 설 지 구	1,000	25	
5	신흥마을공원구역계	용 화 마 을 입 구	840	25	
6	용 화 마 을 입 구	청 도 리 간 도 로	700	10	
7	배수지 진입로		219	8	

## (2) 탐방로

노선번호	탐방로 구간	연 장(km)	비 고	
합 계	23개노선	65.2		
전주시	소 계(9개노선)	17.2		
	1	독백마을~고개(매봉길)	1.5	독배길
	2	도계마을~능선~매봉	2.6	매봉길
	3	도계마을~염불암~능선	1.6	염불암길
	4	도계마을~금선암~능선	1.9	금선암길
	5	도계마을~달성사~금곡사~능선	2.1	금곡사길
	6	도계마을~고개(금곡사길)	1.2	금곡사능선길
	7	도계마을~능선(비단길)	1.6	계곡길
	8	신금마을~능선	2.6	비단길
9	신금마을~능선(비단길)	2.1	약수터길	
김제시	소 계(9개노선)	36.9		
	10	금산사~모악산정~중인동	3.1	모악정길
	11	모악산정~수왕사	1.8	수왕산길
	12	금산사~고개~신암	3.7	청룡사길
	13	금산사~고개~모악산정	2.8	금산사~심원암삼거리~ 심원암길 연결
	14	화율봉~정상~백운동	12.6	모악기맥길
	15	집단시설지구~청련암~청룡사	6.0	청련암길
	16	금평저수지 제방~동곡마을 인근	0.9	금평저수지 옛산길
	17	집단시설지구~화율봉~집단시설지구	5.5	화율봉길
18	화율봉길~화율봉길	0.5	화율봉 중간길	
완주군	소 계(5개노선)	11.1		
	19	선녀폭포~대원사~수왕사	1.3	수왕사길
	20	대원사갈림길~천일암~모악산정상	1.5	청룡사길
	21	선녀폭포~신선바위	2.2	신선길
	22	송학사~수왕사고개	2.0	송학사길
23	장파마을~정상	4.1	내운암길	

## (3) 주차장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m <sup>2</sup> )		동수	비 고
		면적	연면적		
주차장(공중화장실)	1,590	100	100	1	신설(2020.12.4. 고시)

나. 단독시설 계획 : 변경 없음

## (1) 단독시설 총괄표

구 분		개소(동)	부지면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28	18,470	
공공 시설	소 계	4	-	
	배 수 지	1	-	
	소 각 장	1	-	
	안 내 소	1	-	
	오 수 처 리 장	1	-	
휴양 및 편익 시설	소 계	21	14,997	
	휴 게 소	6	-	
	대 피 소	1	-	
	전 망 대	4	80	
	전 망 대 1	1	80	
	전 망 대 2	1	-	
	전 망 대 3	1	-	
	전 망 대 4	1	-	
	보 트 장	1	-	
	뉘 시 터	1	-	
	청 소 년 수 련 원	1	14,784	
	공 중 화 장 실	6	100	
	공 중 화 장 실 1	1	-	
	공 중 화 장 실 2	1	-	
	공 중 화 장 실 3	1	-	
	공 중 화 장 실 4	1	-	
	공 중 화 장 실 5	1	-	
	공 중 화 장 실 6	1	100	
정 자	1	33		
문화 시설	소 계	3	3,473	
	자 연 학 습 장	3	3,473	
	자 연 학 습 장 1	1	1,517	
	자 연 학 습 장 2	1	1,488	
	자 연 학 습 장 3	1	468	

## (2) 단독시설 설치위치

구 분		위 치	비 고
공공 시설	배 수 지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산50-7번지	
	소 각 장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81일원	
	안 내 소		
	오 수 처 리 장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82일원	
휴양 및 편익 시설	휴 게 소		
	휴 게 소 1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4-1일원	
	휴 게 소 2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4-1일원	
	휴 게 소 3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348-8일원	
	휴 게 소 4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350-8일원	
	휴 게 소 5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92-1일원	
	휴 게 소 6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106-2일원	
	대 피 소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4-1일원	
	전 망 대		
	전 망 대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일원	
	전 망 대 2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4-1일원	
	전 망 대 3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산2-1일원	
	전 망 대 4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일원	
	보 트 장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80일원	
	뉴 시 터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99일원	
	청 소 년 수 련 원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352일원	
	공 중 화 장 실		
	공 중 화 장 실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공 중 화 장 실 2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145번지	
	공 중 화 장 실 3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143번지	
공 중 화 장 실 4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번지 일원		
공 중 화 장 실 5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공 중 화 장 실 6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996일원		
정 차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55-1일원		
문화 시설	자 연 학 습 장		
	자 연 학 습 장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일원	
	자 연 학 습 장 2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일원	
	자 연 학 습 장 3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일원	

## (3) 단독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휴양 및 편익 시설	전망대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80	-	-	-	-	
	전망대 3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산2-1번지 일원	-	-	-	-	-	
	청소년수련원							
	공중화장실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	8	1	1	1	
	공중화장실 2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145번지	-	30	1	1	1	
	공중화장실 3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143번지	-	30	1	1	1	
	공중화장실 4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번지 일원	-	8	1	1	1	
	공중화장실 5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	8	1	1	1	
	공중화장실 6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996번지	100	20	20	1	1	
	정자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55-1일원	33	20	20	1	1	
문화 시설	자연학습장 1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1,517	-	-	-	-	
	자연학습장 2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1,488	-	-	-	-	
	자연학습장 3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468	-	-	-	-	

## (4) 단독시설(청소년수련원) 세부결정조서

## 가) 총괄

구 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층수	구조	비고
청소년 수련원	14,784	2,160.71	4,260.82	14.62	23.09	10	지하1 ~지상3	철근콘크리트조한식 기와지붕	

## 나) 건축물별 연면적 및 높이

구 분	건축연면적(㎡)	건물높이(m)	용 도	비고
계	4,260.82			
본 관(1동)	1,004.40	21.60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생활관(2동)	1,906.32	12.30	강의실, 여자숙소, 관리실	
생활관(3동)	478.32	8.92	남자숙소, 식당, 지도자실	
전망대(4동)	47.01	8.86		
정 자(5동)	28.37	8.92		
매점 및 관리사무실(6동)	470.06	8.92	1층 매점, 2층 관리실	
대 문(7동)	129.27	8.94		
그늘막(8동)	45.54	3.78		
지하창고(9동)	55.98	-	창 고	지하
지하저온창고(10동)	95.55	-	창 고	지하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연월일 : 2023년 7월 7일
9. 공원계획 변경도면 : 도면생략
10. 기타 :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063-280-4173), 김제시 공원녹지과(063-540-419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6호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예술기획미술교육연구소)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허가 번호 : 제2023-22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예술기획미술교육연구소
3.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 6길 12, 3층 304호
4. 대표자 : 김소정
5. 허가연월일 : 2023. 06. 28.
6. 설립 목적 : 시각예술분야의 현대 작가지원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조사, 연구의 수행,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 비영리 전시공간운영, 국제교류 사업등을 통하여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과 취약계층 및 문화예술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7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완주서예동행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단체명칭 : 완주서예동행회
2. 등록번호 : 제2023-1-전라북도-14호
3. 대표자 : 여태권
4. 주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47-27
5. 주요사업  
- 서예동호회 발굴, 육성, 지원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23. 6. 29.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49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79호	유한회사 에이치디기술 대표 진하윤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19	2023. 6. 2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0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80호	유한회사 이룸엔지니어링 대표 최진영, 한상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0, 211호(효자동3가)	2023. 6. 2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251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법 인 명 :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고사동)
3. 대표자성명 : 우 범 기
4. 설 립 목 적 : 전주국제영화제 및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 제7~8조, 제20조, 제35조 (신설) 제35조의3, 부칙 제1~2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3. 7. 3..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4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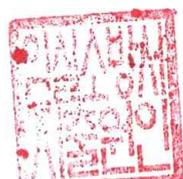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임실소방서 신설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7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임실소방서	임실소방서장인	
"	임실소방서임실119안전센터장인	
"	임실소방서119구조대장인	

등 록 공 인		
"	임실군긴급구조통제단장인	
"	임실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장인	
"	임실소방서보통고충심사위원장인	
"	임실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	
"	임실소방서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	임실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인	

등 록 공 인		
"	임실소방서재무관인	
"	임실소방서물품출납원인	
"	임실소방서물품관리관인	
"	임실소방서분임재무관인	
"	임실소방서징수관인	
"	임실소방서지출원인	

등 록 공 인		
"	임실소방서분임물품출납원인	
"	임실소방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임실소방서수입금출납원인	
"	임실소방서임실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	임실소방서119구조대일상경비출납원인	
"	임실소방서현장대응단일상경비출납원인	
"	임실소방서사법경찰관인	

등 록 공 인		
무주소방서	무주소방서장인	
"	무주소방서무주119안전센터장인	
"	무주소방서구천동119안전센터장인	
"	무주소방서119구조대장인	
"	무주군긴급구조통제단장인	
"	무주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장인	
"	무주소방서보통고충심사위원장인	

등 록 공 인		
"	무주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	
"	무주소방서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	무주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인	
"	무주소방서재무관인	
"	무주소방서물품출납원인	
"	무주소방서물품관리관인	
"	무주소방서분임재무관인	

등 록 공 인		
"	무주소방서징수관인	
"	무주소방서지출원인	
"	무주소방서분임물품출납원인	
"	무주소방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무주소방서수입금출납원인	
"	무주소방서무주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	무주소방서구천동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등 록 공 인		
"	무주소방서119구조대일상경비출납원인	
"	무주소방서현장대응단일상경비출납원인	
"	무주소방서사법경찰관인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전주완산소방서	임실군긴급구조통제단장의인	
"	전주완산소방서임실119안전센터장인	
"	전주완산소방서장인임실119안전센터민원전용	

폐 기 공 인		
"	전주완산소방서임실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장수소방서	장수소방서무주119안전센터장인	
"	장수소방서구천동119안전센터장인	
"	무주군긴급구조통제단장의인	
"	장수소방서무주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	장수소방서구천동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	장수소방서장인무주119안전센터민원전용	
”	장수소방서장인구천동119안전센터민원전용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56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7.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13-1-전라북도-20호
2. 단체명칭 : 강살리기 임실네트워크
3. 변경 내용 : 소재지 및 사무국장 변경  
(변경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2길 19  
(변경후) 임실군 임실읍 봉황5길11, 사무국장(김의형)
4. 주된 사업
  - 주민참여 강살리기(도랑살리기, 주민환경교육 등)
  - 지역의 환경자원보호(체험교육, 환경감시 활동 등)
5. 변경일자 : 2023. 7. 4.

전라북도공고 제2023-1257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옥서~성산(709호선)
공사의 종류	도로확포장 L=4.22km(교량제가설 L=17.0m)(2차선→4차선)		
구 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 옥서면 옥봉리		
공사시행장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74-1번지 ~ 옥서면 옥봉리 1311-2번지		
착공 예정일	2016. 9.	준공예정일	당초 : 2022. 12. 31. 변경 : 2024. 05. 31.
목적과 사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제공에 있음 * (변경사유) 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기간 변경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261호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북식품산업협의회)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관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허가번호 : 제2023-2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식품산업협의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 301호
4. 대표자 : 김창우
5. 허가연월일 : 2023년 7월 4일
6. 설립 목적
  - 이 법인은 식품기업의 모임으로 참여와 나눔의 기치 아래 전라북도 식품의 경쟁력 향상과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73호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작은 청소년 배움터
2. 주사무소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806
3. 대 표 자 : 천용규(1968.09.18.)
4. 허가번호 : 제2014-6450000-008-0002호
5. 주된사업 :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위한 지도·육성 사업
6. 변경사항  
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등), 제46조(법인해산) 일부개정
7. 변경일자 : 2023. 07. 05.

#### 사단법인 작은 청소년 배움터 정관변경 세부내용

현 행	개 정
<b>제1장 총칙</b>  <b>제8장 재정</b>  <b>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등)</b>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b>제1장 총칙</b>  <b>제8장 재정</b>  <b>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등)</b>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b>제9장 보칙</b>  <b>제46조(법인해산)</b>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b>제9장 보칙</b>  <b>제46조(법인해산)</b> 1. 좌동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276호

## 제402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7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북에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배병훈(063-280-2947)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7
----------	-----

제출년월일 : 2023. 7.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여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전북애향본부”로 명칭을 변경('22.11)함에 따라 지원 조례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 등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투자 여건 홍보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으로 “생활인구” 지원정책이 확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치 활동 필요

2. 주요내용

- 가.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전북애향본부”로 수정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명예도민의 날 개최”를 “명예도민 관리”로 수정 (안 제2조, 안 제2항)
  -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관리 강화
- 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추가 (안 제2조, 안 제3호)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 확산을 위한 출향인 및 도민홍보 강화
- 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 조항 신설 (안 제2조, 안 제4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투자여건 홍보 필요
- 마. 생활인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사업 조항 신설 (안 제2조, 안 제5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으로 “생활인구”개념이 도입되어 앞으로 생활인구 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치 활동 필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정책),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3. 5. 12. ~ 2023. 6. 1.(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전북애향본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로, “전북애향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전북애향본부(이하 “애향본부”라 한다)”로, “각호”를 “각호”로, “보조 할”을 “보조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명예도민의 날 개최”를 “명예도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개”를 “전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
- 5. 생활인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u>전북애향운동본부</u>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도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금 지원사업) <u>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전북애향운동본부</u>(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조</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도민화합 교례회, <u>명예도민의 날 개최</u></li> <li>3. 도민의식 대전환 운동 <u>전개</u></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생 략)</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북애향본부</u>----- -----.</p> <p>제2조(보조금 지원사업) <u>전라북도지사</u>----- ---- <u>전북애향본부</u>(이하 “<u>애향본부</u>”라 한다)---- ----- <u>각 호</u>----- ----- <u>보조</u> <u>할</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명예도민 관리</u></li> <li>3. ----- <u>전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u></li> <li>4. <u>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홍보</u></li> <li>5. <u>생활인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사업</u></li> <li>6. (현행 제4호와 같음)</li> </ol>

##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6. 30.(금) 09: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42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월 신규 국가산단에 우리도 2개소(익산 국클 2단계, 완주 수소특화)가 지정됨</li> <li>○ 신규 국가산단 선정 시 기업수요 확보, 사업 경제성 등 예타에 준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추진된 만큼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 방문 시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전 시·도가 공동으로 예타면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유치추진단)</p>
2023-43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사후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선발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사후관리가 중요함</li> <li>○ 시범사업의 성과, 기업체 반응, 6개월·1년 뒤 변화된 내용 등을 데이터화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참여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li> <li>○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6.28.)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를 발표한 만큼 우리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대외협력과)</p>
2023-44	지방도 개설 및 확장사업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만큼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li> <li>○ 지방도 관련 우리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방도 개설 및 확장 관련 추가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도로공항철도과)</p>
2023-45	장마철 폭우 재난안전 대응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25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지난 28일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li> <li>○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하고,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고 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연재난과)</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46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 도내 기업 지원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추가개정안을 의결(공포 6.30./시행 7.21.)함에 따라 한일 무역관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li> <li>○ 도내 기업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하는 한편,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기업의 애로상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애로해소지원단)</p>
2023-47	숙박 바가지 요금 대응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5일 사이 흠뻑소가 익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li> <li>○ 축제 음식 바가지 상술과 마찬가지로 숙박비 바가지 요금으로 지역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군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건강증진과 / 협조 : 관광산업과)</p>
2023-48	생활임금 책정시 적정임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최저임금 관련 노사 입장차가 커 법정기한인 8월 5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li>○ 이와 관련해 우리도 생활임금 결정 시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는 한편 시·도간 수준을 비교하는 등 적정 생활임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일자리민생경제과)</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임 1주년 청원 노고 감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1일이면 취임 1년이 되며 지난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li> <li>- 지난 1년간 전복이 바뀌고 있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과가 나오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li> <li>- 그동안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성찰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li> <li>○ <b>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반영 활동 총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13일 국무총리 주제로 지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에 총력을 다해야함</li> <li>- 부처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실국장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례 반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 특별자치도추진단)</p> </li> <li>○ <b>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및 산업육성 지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에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러시가 지속돼, 새만금 투자유치를 대통령이 발표하는 등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li> <li>- 6월 28일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되어 기업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공모 선정 시까지 이차전지 산업육성의 기세를 지속해 가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과)</p> </li> </ul>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정기인사 후 신속한 조직안정</p> <p>- 정기인사가 시차를 두고 진행됨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국과장, 팀장들은 담당 직원들과 소통하여 소관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원팀이 되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조직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hr/> <p>○ 하계휴가 적극 실시 권장</p> <p>-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은 직원들의 하계 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 바람.</p> <p>- 다만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므로 대회 기간은 가급적 피해 휴가를 실시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hr/> <p>○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노력 철저</p> <p>-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전 직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국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완주군 고시 제2023-68호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봉동 대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삼례 봉동 대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 28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7월 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 봉동읍 낙평리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완주군계획시설(도로:삼례 봉동 대로1-3호선)사업
  - 명 칭 :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L=5,600m, B=24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성 명
  - 당초 :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 변경 : 완주군수(건설도시과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변경)
  -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변경없음)
8.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당초지 적면적 (㎡)	편입예정 면적 (당초) (㎡)	편입예정 면적 (변경)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 면	동,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 목				주 소	성 명	권리 의종 류	주 소	성 명	
1	삼례 읍	신금 리	924 -47	924 -47	도	3,428	2,272	2,272		완주군				
2	"		954	954	구	6,493	15	15		국(농수 산부)				
3	"		924 -34	924 -34	구	72	41	41		완주군				
4	"		924 -35	924 -35	구	48	48	48		완주군				
5	"		924 -36	924 -36	구	124	124	124		완주군				
6	"		924 -37	924 -37	구	60	60	60		완주군				
7	"		924 -38	924 -38	구	52	44	44		완주군				
8	"		924 -16	924 -16	도	1,368	833	833		완주군				
9	"		954 -1	954 -1	도	1,792	489	489		국(농수 산부)				
10	"		926 -13	926 -13	도	4,291	2,522	2,522		완주군				
11	"		926 -41	926 -41	답	22	22	22		완주군				
12	"		926 -27	926 -27	구	122	87	87		완주군				

13	"		926 -28	926 -28	구	66	66	66		완주군				
14	"		926 -29	926 -29	구	65	65	65		완주군				
15	"		926 -30	926 -30	구	124	108	108		완주군				
16	"		926 -2	926 -43	답	2,974	225	224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333 101동 1***호(삼례우성아 파트)	장*용	근저 당	완주 군 삼례 읍 삼례 리89 8-1	삼례 농업 협동 조합	
17	"		926 -3	926 -44	답	1,477	486	481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8*	황*규				
18	"		926 -4	926 -45	답	1,472	835	835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08-1*	황*규				
19	"		926 -5	926 -5	답	676	675	676	완주군 삼례읍 원신금2길 3*	여*희				
20	삼례 읍	신금 리	926 -38	926 -38	도	598	598	598		완주군				
21	"		926 -39	926 -46	답	1,654	378	379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6*	소*영	근저 당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서부 지소)	삼례 농업 협동 조합	
22	"		969	969	구	1,909	115	115		국(농수 산부)				
23	"		970	970	도	1,690	71	71		국(농수 산부)				
24	"		928 -7	928 -21	답	3,075	1,660	1669	전북 장수군 변암면 만항길 3*	양*식				

25	"		928 -17	928 -17	도	572	572	572		완주군				
26	"		928 -19	928 -19	도	246	246	246		완주군				
27	"		928 -20	928 -20	도	23	23	23		완주군				
28	"		974	974	구	2,161	113	113		국(농수 산부)				
29	"		554 -1	554 -5	답	2,020	698	702	전북 장수군 번암면 만항길 3*	양*식				
30	"		599 -1	599 -1	답	19	19	19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8*	소*영				
31	"		599 -5	599 -5	도	68	68	68		완주군				
32	"		599 -7	599 -7	도	107	107	107		완주군				
33	"		600	600 -2	답	27	10	9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08-1*	황*규				
34	"		554 -3	554 -3	도	92	89	89		완주군				
35	"		554 -2	554 -3	도	243	110	110		완주군				
36	"		903	554 -2	도	1,057	46	46		국(건설 부)				
37	삼례 읍	신금 리	593 -1	593 -9	답	1,089	798	819	전북 장수군 번암면 만항길 3*	양*식				
38	"		593 -7	593 -7	도	313	313	313		완주군				
39	"		930 -11	930 -11	도	133	113	113		완주군				
40	"		982	982	답	1,249	96	96		국(기획 재정부)				

41	"	981	981	구	11,384	703	703		국(농수산부)					
42	"	932-6	932-16	답	3,570	1,433	1,439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64-*	임*환	근저당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62-1 부광빌딩 3층	(주)마더스팜	채무자: 김*형	
43	"	932-12	932-12	도	235	214	214		완주군					
44	"	932-13	932-13	도	453	453	453		완주군					
45	"	932-15	932-15	도	94	94	94		완주군					
46	"	932-7	932-7	답	344	344	344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8*	이*식					
47	"	934-6	934-14	답	4,028	21	22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13동 5***호(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이*철					
48	"	934-7	934-15	답	2,766	1,668	1,670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22, 110동 1***호(태평동, 전주태평에스케이뷰아파트)	서*선				2분의1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22, 110동 1***호(태평동, 전주태평에스케이뷰아파트)	장*순				2분의1	
49	"	934-11	934-11	도	649	649	649		완주군					

50	"		934 -13	934 -13	도	179	179	179		완주군				
51	"		987	987	도	1,471	97	97		국(농수 산부)				
52	삼례 읍	신금 리	936 -8	936 -20	답	4,000	295	298	군산시 하나운로48, 207동 4**호(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한*은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삼례 농업 협동 조합	6분 의4
									인천시 서구 연희호33, 2비**호(연희동, 연희에어빌)	한*진				6분 의2
53	"		936 -9	936 -21	답	1,681	1,250	1,250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7*	김*철				
54	"		936 -15	936 -15	도	439	439	439		완주군				
55	"		936 -17	936 -17	도	385	385	385		완주군				
56	"		936 -18	936 -18	답	146	146	146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57*	김*철				
57	"		936 -19	936 -19	도	1	1	1		완주군				
58	"		938 -12	938 -19	답	2,266	66	6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70-4 거산평화아파트 8**호	이*규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37 거성 화산아파트 3동 1***호	김*란				2분 의1
59	"		938 -13	938 -20	답	1,194	721	710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	손*자				

60	"		938 -15	938 -15	도	186	186	186		완주군				
61	"		896	896	도	488	95	95		국(건설부)				
62	"		895 -4	895 -4	도	543	81	81		국(건설부)				
63	"		117 -4	117 -4	천	89	88	88		국(재정경제원)				
64	"		915 -1	915 -1	도	3,726	179	179		국(농수산부)				
65	"		914 -1	914 -1	구	19,218	267	267		국(농수산부)				
66	"		117 -2	117 -33	답	593	46	42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28*	박*순				
67	"		117 -24	117 -24	도	161	161	161		완주군				
68	"		117 -25	117 -36	답	159	139	145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28*	박*순				
69	"		893 -1	893 -1	구	1,646	250	250		국(농수산부)				
70	"		112 -1	112 -6	답	1,099	18	17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반월동)	남*진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73 (반월동)	조춘 새마을 금고	
71	"		112 -4	112 -4	도	88	88	88		완주군				

72	"	112-5	112-9	답	208	173	173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반월동)	남*진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쪽구 름로 73 (반월 동)	조촌 새마 울금 고
73	"	112-3	112-8	도	33	7	9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7*	장*세			
74	"	112-2	112-7	도	7	1	1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7*	장*세			
75	"	113-2	113-2	도	13	13	13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	장*세			
76	"	113-3	113-3	도	56	56	56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	장*세			
77	"	113-5	113-5	답	95	95	95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반월동)	남*진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쪽구 름로 73 (반월 동)	조촌 새마 울금 고
78	"	113-4	113-4	도	152	152	152		완주군			
79	"	113-6	113-6	도	13	13	13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	장*세			

80	"		113 -1	113 -7	답	1,270	35	32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반월동)	남*진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쪽구 름로 73 (반월 동)	조촌 새마 을금 고	
81	"		108 -1	108 -5	답	4,317	2	2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12*(서신동)	정*숙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완산 구 기린 대로 232( 서노 송동)	전주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12*(서신동)	오*환				2분 의1
82	"		108 -2	108 -2	도	3	3	3	이리시 신동 806-6 동신연립아파트2** 호	이*복				
83	삼 례 읍	신 금 리	108 -3	108 -3	도	3	3	3	이리시 신동 806-6 동신연립아파트2** 호	이*복				
84	"		114 -6	114 -6	도	3	3	3		완주군				
85	"		114 -5	114 -5	도	6	6	6		완주군				
86	"		114 -3	114 -6	도	176	5	3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 (서신동)	정*숙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완산 구 기린 대로 232( 서노 송동)	전주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12*(서신동)	오*환					2분 의1
87	"		114 -2	114 -5	도	93	5	6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	이*복					
88	"		116 -2	116 -2	답	3	3	3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 (서신동)	정*숙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완산 구 기린 대로 232( 서노 송동)	전주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12* (서신동)	오*환					2분 의1
89	"		116 -3	116 -3	도	30	30	30		완주군					
90	"		116 -1	116 -1	답	46	46	46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105동3**호(봉동주 공아파트)	이*상					
91	"		115 -5	115 -5	답	24	24	24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105동3**호(봉동주 공아파트)	이*상					
92	"		115 -7	115 -7	도	149	149	149		완주군					
93	"		115 -6	115 -6	도	3	3	3		완주군					
94	"		115 -2	115 -2	도	3	2	2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	이*복					
95	"		115 -1	115 -8	잡	610	8	5	김제시 금구면 금구로 4*	송*래					
96	삼례 읍	구와 리	866 -1	866 -2	답	2,869	69	7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38-*	김*자					

97	"		922	922	구	394	33	33		국(농림수산부)				
98	"		867	867-1	답	2,099	92	94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0 롯데아파트 105동7**호	윤*숙				2099분의699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5-1 거성그린맨션아파트 1동 1***호	김*미				2099분의700
	삼례읍	구와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0 롯데아파트 105동7**호	윤*숙				2099분의700
99	"		914	914	도	598	88	88		국(건설부)				
100	"		915	915	구	3,283	801	801		국(농림수산부)				
101	"		737-3	737-3	도	34	34	34		완주군				
102	"		865-1	865-1	도	205	205	205		완주군				
103	"		865-2	865-2	답	49	49	49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0*	임*민				
104	"		737	737-4	답	3,208	2,153	2,173	전주시 완산구 마박골로 5*(중화산동2가)	정*애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서노송동)	전주농업협동조합	2분의1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50, 103동2**호(중화산 동2가, 현대에코르아파트)	김*식					2분 의1
105	"	737 -1	737 -1	도	854	854	854			완주군					
106	"	735 -6	735 -24	답	3,398	250	250	익산시 부송동 669 리첸시빌아파트 503-1***	김*선						2분 의1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	송*용						2분 의1
107	"	735 -4	735 -22	답	1,947	4	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아파트 123동 9**호	박*삼						
108	"	735 -5	735 -23	답	2,318	1,766	1770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90-24 숲속파크빌 에이동 2**호	나*오	가압 류	서울 시 도봉 구 쌍문 동 619( 불암 지소)	북부 농업 협동 조합		4294 분의 526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제일아파트 2동 1**호	임*환						4294 분의 62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단독필지 3**호	나*범						4294 분의 628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88(레이크펠 리스), 120동 1**1호	윤*호						4294 분의 628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88*	김*경						4294 분의 628

									전주시 동산동 703-*	문*회					4294 분의 628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1 도시개발아파트 506-4**	주*애	가압 류	서울 시 종로 구 세문 안로 3길 30, 13층( 내수 동)	(주)케이비 이비 국민 카드		4294 분의 628
109	삼례 읍	구와 리	735 -18	735 -18	도	907	907	907							
110	"		735 -17	735 -17	도	106	106	106							
111	"		735 -2	735 -21	답	3,315	649	65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187-3 신용고궁맨션101동3 **호	임*숙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추동길79-4*(원당동 )	임*동					2분 의1
112	"		735 -15	735 -25	답	1,654	103	107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30*	송*섭					5분 의1
									광주시 북구 감적길38, 8-*(우산동)	박*수					5분 의1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 40*	서*철					5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11*	전*철					5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32, 104동 4**호(삼천동1가, 삼천동남양아파트)	박*순				5분 의1
113	"	764 -1	764 -1	도	175	175	175		완주군				
114	"	764	764 -3	답	325	319	319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46-*(우아동3가)	백*철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삼례 농업 협동 조합	
115	"	765 -2	765 -2	답	402	402	402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46-*(우아동3가)	백*철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삼례 농업 협동 조합	
116	"	765 -5	765 -5	도	172	172	172		완주군				
117	"	763 -1	763 -1	도	68	68	68		완주군				
118	"	765 -3	765 -3	도	329	329	329		완주군				
119	"	765 -1	765 -1	답	857	857	857	익산시 남중동 370-4 신일아파트1동1**호	이*현				
120	"	703	703 -1	답	1,041	7	7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46-*(우아동3가)	백*철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삼례 농업 협동 조합	

121	"		702	702 -2	답	1,753	8	9	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5-1 거성그림맨션아파트 2동1***호	김*임					
122	"		766 -3	766 -3	도	336	336	336		완주군					
123	삼 례 읍	구 와 리	766 -4	766 -4	답	303	303	30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161 1105동 1***호(초지동 그린빌아파트)	이*진					2분 의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메시장로2길 53-1, 4**호(이동)	이*희					2분 의1
124	"		766 -1	766 -6	답	1,511	545	548	경남 거제시 고현동 860 거제롯데인베스가 108-2**	박*용					
125	"		767 -6	767 -11	답	1,371	1,001	980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46*	이*현	근 저 당	완 주 군 삼 례 읍 동 학 로42	삼 례 농 업 협 동 조합		
126	"		767 -3	767 -3	도	736	736	736		완주군					
127	"		767 -2	767 -10	도	60	35	28	완주군 삼례면 구와리 46*	이*교					
128	"		911	911	도	2,934	53	53		국(건설 부)					
129	"		771 -4	771 -4	도	6	6	6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47*	이*관					
130	"		701 -2	701 -5	도	162	26	26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46*	이*천					

131	"	701 -1	701 -4	답	516	214	79	전주시 덕진구 송권동1가 626-3 용소마을제일아파트 102-1***	정*섭				
132	"	771 -3	771 -3	도	208	208	208		완주군				
133	"	595 -2	595 -9	답	1,532	358	360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85*	오*철	가치 분	대구 시 유성 구 봉산 로32 길18, 3** 호(봉 산동)	소* 자	
134	"	595 -5	595 -5	도	188	188	188		완주군				
135	"	596 -1	596 -1	도	33	33	33		완주군				
136	"	596	596 -2	답	1,306	279	277	전주시 완산구 세터로 1* (서신동)	김*순				
137	"	595 -1	595 -8	답	1,998	992	991	완주군 삼례읍 삼례화산2길 13-6, 1**호	이*재	근저 당	서울 시 중구 통일 로 120( 충정 로1 가) (범일 동지 점)	농협 은행 (주)	
138	"	595 -3	595 -3	도	436	436	436		완주군				
139	"	580 -1	580 -1	도	240	240	240		완주군				

140	"		580	580 -4	답	792	456	456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115 205동 8**호(송천동2가,전 주송천동한라비발디 2단지)	유*숙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용진 면 상운 리 85	용진 농업 협동 조합	4분 의3
	삼례 읍	구와 리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동5**호(서신동, 감나무골대우대창아 파트)	박*경				4분 의1
141	"		594	594 -3	답	1,057	436	463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115 205동 8**호(송천동2가,전 주송천동한라비발디 2단지)	유*숙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용진 면 상운 리 85	용진 농업 협동 조합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동5**호(서신동, 감나무골대우대창아 파트)	박*경				4분 의1
142	"		594 -1	594 -1	도	139	139	139		완주군				
143	"		874	874	구	69,000	842	842		국(농림 수산부)				
144	"		581 -3	581 -3	도	32	32	32		완주군				
145	"		581 -4	581 -4	답	47	47	47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1*	박*배				
146	"		593 -1	593 -1	도	281	281	281		완주군				

147	"	593	593 -3	전	545	525	526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8 럭키우아아파트8-5* *	김*란					
148	"	592 -1	592 -1	도	144	144	144		완주군					
149	"	592	592	전	170	170	17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08-1*	임*영					
150	"	588	588	전	80	80	80	군산시 나운동 831 주공2아파트8동3** 호	유*송	근저 당	완주 군 삼례 읍 삼례 리 898- 1	삼례 농업 협동 조합	채무 자: 유* 희	
151	"	588 -1	588 -1	도	137	137	137		완주군					
152	"	892	892	도	436	43	43		국(건설 부)					
153	"	601	601 -3	답	5,289	48	50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남양반월타운103동1 ***호	김*원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엘지동아아파트 107동 9**호	박*식					2분 의1
154	"	601 -1	601 -4	답	1,481	140	143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45, 201동 (삼천동1가, 홍건삼천2차아파트)	전*표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289-5 홍건삼천2차아파트2 01동1***호	김*숙					2분 의1

155	"		890	890	도	754	87	87		국(건설부)					
156	삼례읍	구와리	602-1	602-1	도	130	130	130		완주군					
157	"		602	602	답	172	166	26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63-6 삼례우성아파트 101-2**	김*열					
158	"		610-3	610-3	도	67	67	67		완주군					
159	"		610-1	610-8	답	1,784	185	171	전주시 완산구 말내3길 22, 102동1***호(평화동 2가 동아현대아파트)	염*순				10분의7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1*	정*순					10분의2
									전주시 완산구 말내3길 22, 102동1***호(평화동 2가 동아현대아파트)	강 *					10분의1
160	"		610-2	610-9	답	2,587	924	935	대전시 중구 옥계동 34-16 동광맨션3**호	박*중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서노송동 685-1(완산지사문소)	전주농업협동조합		
161	"		610-5	610-5	도	265	265	265		완주군					
162	"		603-5	603-5	도	94	94	94		완주군					
163	"		603-3	603-3	도	247	247	247		완주군					

164	"		603 -1	603 -1	답	194	194	194	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101동2***호(송천동 1가 센트럴파크1단지아 파트)	유*숙				
165	"		609	609 -3	답	881	763	768	완주군 삼례읍 신타리 864-*	임*수				
166	"		609 -1	609 -1	도	358	358	358		완주군				
167	"		608 -1	608 -1	도	200	200	200		완주군				
168	삼례 읍	신타 리	913 -7	913 -7	도	163	158	158		완주군				
169	"		913 -2	913 -13	답	2,587	1,145	1,147	완주군 삼례읍 신타리 87*	임*수				
170	"		913 -3	913 -3	답	438	437	437		국(재정 경제원)				
171	"		913 -8	913 -8	답	329	329	329		국(재정 경제원)				
172	"		914 -3	914 -3	도	69	69	69		완주군				
173	삼례 읍	신타 리	913 -10	913 -10	도	732	732	732		완주군				
174	"		913 -4	913 -14	답	1,706	1,152	1,154	완주군 삼례읍 하리신타2길 *	오*환				18분 지6
									완주군 삼례읍 신수로 389-1*	이*미	근저 당	완주 군 삼례 읍 동학 로42	삼례 농업 협동 조합	18분 지12
175	"		913 -5	913 -15	답	1,997	655	660	완주군 삼례읍 신타리 78*	이*자				

176	"		619 -1	619 -3	답	249	242	241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8-***	김*희				
177	"		619 -2	619 -2	도	338	338	338		완주군				
178	"		621 -3	621 -8	답	1,124	1,098	1,09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287-4 우성삼천2차아파트1 02-1***	권*주				
179	"		618 -1	618 -1	도	254	254	254		완주군				
180	"		621 -4	621 -4	도	238	238	238		완주군				
181	"		621 -2	621 -7	답	1,782	8	8	전주시 덕진구 진산로 191-*(인후동1가)	김*남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무삼 지로 85(인 후동 1가)	노송 신용 협동 조합	
182	"		621 -1	621 -7	답	2,469	47	46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02-9*	이*창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02-9*	이*석				2분 의1
183	"		622	622 -1	답	3,663	326	331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105동5**호(송천동1 가 센트럴파크1단지아 파트)	이*화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136, 205동 1***호(호성동1가, 호성동 진흥더블파크2단지 아파트)	최*혜	근저당, 지상권	완주군 봉동읍 봉동서로133	봉동농업협동조합	2분의1
184	"		641	641	답	346	346	346	완주군 삼례읍 신탐리 70*	권*용				
185	"		641-1	641-1	도	159	159	159		완주군				
186	"		640	640	답	549	549	549	완주군 삼례읍 신탐리 62*	임*구				
187	"		640-1	640-1	도	232	232	232		완주군				
188	"		920-15	920-15	구	220	16	16		국(농수산부)				
189	삼례읍	신탐리	623-2	623-2	답	326	326	326	완주군 삼례읍 신탐리 70*	권*용	근저당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98-1	삼례농업협동조합	
190	"		638	638-3	답	1,275	1,175	1,174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898-2 전주첨단코아루아파트 107동6**호	신*식				
191	"		638-1	638-1	도	455	455	455		완주군				
192	"		637	637-4	답	646	611	610	완주군 삼례읍 신탐리 88*	권*택				
193	"		637-1	637-1	도	130	130	130		완주군				

194	"		629	629	답	266	266	266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47-*	이*철				
195	"		629 -1	629 -1	도	201	201	201		완주군				
196	"		637 -3	637 -3	도	26	5	5		국(건설교통부)				
197	"		920 -14	920 -14	도	598	1	1		국(국토해양부)				
198	"		927 -3	927 -3	도	41	2	2		국(건설교통부)				
199	"		627	627	답	390	390	39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47-*	이*철				
200	"		627 -1	627 -1	도	73	73	73		완주군				
201	"		627 -4	627 -4	도	7	7	7		완주군				
202	"		669	669	답	592	587	592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562-*	정*자				
203	"		669 -1	669 -1	도	96	96	96		완주군				
204	"		669 -4	669 -4	도	297	297	297		완주군				
205	"		669 -3	669 -3	도	1,169	705	705		국(건설교통부)				
206	"		671 -3	671 -3	도	310	307	307		국(건설교통부)				
207	"		671 -4	671 -4	도	125	116	116		완주군				
208	삼례읍	신타리	943 -1	943 -1	도	87	14	14		국(건설부)				
209	"		671	671	답	655	574	574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562-*	정*자				

210	"		672 -2	672 -2	답	189	187	189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1길53-4, 4**호(인후동1가, 다세대주택)	허*철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8-12 다세대주택 4**호	홍*래					2분 의1
211	"		672 -3	672 -3	도	65	10	10		국(건설 교통부)					
212	"		671 -1	671 -1	도	25	25	25		완주군					
213	"		943	943	도	44	44	44		국(건설 부)					
214	"		668 -10	668 -10	도	167	167	167		완주군					
215	"		668 -4	668 -4	도	51	51	51		완주군					
216	"		668 -1	668 -1	답	90	90	90	완주군 삼례읍 신탕리 78*	이*자					
217	"		668 -12	668 -12	도	7	7	7		완주군					
218	삼례 읍	수계 리	235	235 -3	답	5,669	24	21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94-18, 가동 2**호(고강동, 고리울파크빌리지	황*임					
219	"		219	219 -3	답	1,478	978	995	전주시 덕진구 붓대3길29, 111동 6**호(송천동2가, 송천주공아파트)	서*주					2분 의1

									남원시 요천로1300, 105동 5**호(조산동, 메카센트럴아파트)	천*님	근저당	남원시 의총로28(금동)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2분의1
220	"		176-4	176-4	답	267	267	267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서*자				
221	"		220-4	220-5	전	975	390	391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49-*	오*희	근저당, 지상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고사동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이*심
222	"		177	177	임	412	412	412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서*자				
223	"		176-2	176-11	답	1,273	281	283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서*자				
224	삼례읍 수계리		177-1	177-1	도	1	1	1		완주군				
225	"		176-5	176-5	도	234	234	234		완주군				
226	"		176-6	176-6	답	129	129	129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서*자				
227	"		173	173-12	답	831	793	791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179, 212동 1***호(호성동1가, 호성주공아파트)	전*경				2929분의99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6 제일아파트2층 4**호	남*레				2929 분의 73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1 금호칭솔아파트 101-1***	남*레				3661 25분 의61 488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	농업회 사법인 유한회 사 유진농 산				3661 25분 의89 137
228	"	147 -7	147 -7	답	12	12	12		완주군				
229	"	148 -2	148 -5	답	874	2	2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5동5**호(중화산동2 가, 한신코아아파트)	김*순				3분 의1
								완주군 봉동읍 둔산2로 65-*	문*순				3분 의1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	농업회 사법인 유한회 사 유진농 산				3분 의1
230	"	173 -6	173 -6	도	158	158	158		완주군				
231	"	173 -7	173 -7	답	187	187	187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45-*, (인후동2가)	이*희				2929 분의 99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6 제일아파트2층 4**호	남*레				2929 분의 73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1 금호청솔아파트 101-1***	남*레					3661 25분 의61 488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	농업회 사법인 유한회 사 유진농 산					8913 7분 의89 137
232	"		221 -2	221 -6	답	803	147	162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0 201동4**호(우아동2 가 진버들마을 대우2차아파트)	권*숙					
233	"		171	171	답	172	172	172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28*	한*수					
234	삼례 읍	수계 리	171 -1	171 -1	도	223	223	223		완주군					
235	"		221 -3	221 -7	답	735	601	583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136, 203동4**호(호성동 진흥더블파크2단지 아파트)	신*홍	근저 당	서울 시 중구 동일 로 120( 충정 로1 가) (호성 파크 지점)	농협 은행 주식 회사		
236	"		221 -5	221 -5	도	91	91	91		완주군					
237	"		169 -3	169 -3	도	273	273	273		완주군					
238	"		170 -5	170 -5	도	28	28	28		완주군					

239	"	221 -4	221 -8	답	827	230	230	이리시 남중동 202-2*	이*명	근저 당	진주 시 완산 구 태평 동1 가 44-1	(주)전 일상 호신 용금 고	채무 자: 김* 길
										근저 당	이리 시 마동 132 신설 지 시영 아파 트 2동 2** 호	이* 구	채무 자: 김* 길, 이* 명
										가압 류	서울 시 중구 남대 문로 2가 9-1	(주)국 민은 행	
										압류		국(익 산 세무 서장 )	
										압류		익산 시	

										강제 경매 신청	진주 시 덕진 구 송천 동1 가62 1-1 한양 아파 트10 9동6 **호	이* 원	
										압류	서울 시 마포 구 독막 로 311( 엽리 동) (대전 동부 지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압류		대전 시 서구	
										압류		국( 대전 지방 검찰 청)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대전중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40	"		169 -1	169 -5	답	749	679	662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731-3 송산주공아파트 501동1***호	이*탁	근저당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민락지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이*숙
											압류		국(의정부세무서장)	
241	"		170 -8	170 -8	답	223	223	2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859, 119동2***호(성사동, 원당 이편한세상)	송*정				
242	"		170 -9	170 -9	도	374	374	374		완주군				
243	삼례읍	수계리	169 -2	169 -6	도	7	6	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아중현대아파트 104동 7**호	이*남				
244	"		170 -2	170 -2	도	6	6	6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1*	김*수				

245	"		170 -6	170 -8	도	5	5	5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1*	김*수				
246	"		941	941	도	260	42	42		국(건설 부)				
247	"		168 -4	168 -13	도	26	8	9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9*	권*이				
248	"		168 -6	168 -6	도	76	40	40		완주군				
249	"		168 -11	168 -11	도	3	3	3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9*	권*이				
250	"		168 -1	168 -12	답	2,128	1,528	1,489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유*순				
251	"		168 -7	168 -7	도	651	641	641		완주군				
252	"		168 -10	168 -10	도	48	48	48		완주군				
253	"		168 -9	168 -9	도	53	45	45		완주군				
254	봉동 읍	고천 리	1000	1000	구	80,507	891	891		국(농림 수산부)				
255	"		775	775 -3	답	1,182	613	607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17, 4**호(서신동)	정*명				3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8 럭키우아아파트 5동 3**호	송*진				3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790-7 *층	정*명				3분 의1
256	"		775 -1	775 -1	도	144	133	133		완주군				

257	"		773	773 -3	전	867	579	597	완주군 상관면 신리607 신세대지큐빌 아파트103-2**	김*균					
258	"		773 -1	773 -1	도	351	351	351		완주군					
259	"		774	774 -1	전	585	2	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0-3 남양연립 2**호	박*룡	근저 당	전주 시 덕진 구 진북 동 361- 8	(주)스 타상 호저 축은 행		
260	부 동 읍	고 천 리	781	781 -4	전	1,464	369	375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5동5**호(송천동1 가,송천동진흥더블파 크아파트)	유*욱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천마 산로 65, 1층1 03호( 송천 동2 가)	전평 신용 협동 조합		
261	"		781 -1	781 -1	도	180	180	180		완주군					
262	"		782 -2	782 -5	담	3,252	335	342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9*	이*욱					
263	"		782 -3	782 -3	도	146	146	146		완주군					
264	"		760 -2	760 -2	담	2,398	1,090	1,094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2길23, 101동8**호(효자동1 가,대명까치맨션아파 트)	김*관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2길23, 101동8**호(효자동1 가,대명까치맨션아파 트)	김*호					2분 의1
265	"	760 -6	760 -6	도	506	506	506			완주군					
266	"	760 -3	760 -10	임	211	174	177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45*	방*안						3분 의1
								군산시 구암동 317-*	진*심						3분 의1
								군산시 구암동 65 현대아파트 109동 1***호	방*희						3분 의1
267	"	760 -8	760 -8	도	133	133	133			완주군					
268	"	783 -8	783 -10	진	304	37	35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149, 201동6**호(효자동2 가,엘드효자2차수목 토아파트)	최*현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백제 대로 566(금 암 동) (호암 로지 점)	(주)전 북은 행			

269	"		783 -6	783 -9	답	2,017	168	162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149, 201동6**호(효자동2 가,엘드효자2차수목 토아파트)	최*현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백제 대로 566( 금암 동) (호암 로지 점)	(주)전 북은 행
270	"		759 -2	759 -2	답	119	119	119	완주군 봉동읍 한계길10, 3동4**호(진성아파 트)	이*오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3 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271	"		759 -1	759 -1	도	134	134	134		완주군			
272	"		791	791 -1	답	618	3	4	전주시 완산구 호성로132, 104동4**호(호성동1 가,호성동진흥더블파 크1단지아파트)	조*열			
273	"		1023	1023	도	3,457	91	91		국(건설 부)			
274	"		792 -2	792 -9	답	760	12	4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4*	나*동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삼례 읍 삼례 로 356	삼례 신용 협동 조합

275	"		792 -3	792 -3	답	251	251	251	익산시 동서로 63, 102동2***호(어양동, 어양이편한세상아파 트)	김*식	근저 당	익산 시 평화 로 698( 인화 동2 가) (부송 지점)	익산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봉동 읍	고천 리							익산시 동서로 63, 102동2***호(어양동, 어양이편한세상아파 트)	김*식	근저 당	익산 시 평화 로 698( 인화 동2 가) (부송 지점)	익산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276	"		792 -4	792 -10	답	333	333	33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21-*	엄*섭				333 분의 166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16, 108동4**호(만성동, 엘에이치퍼스트리움 )	이*숙				333 분의 167
277	"		792 -5	792 -5	도	145	145	145		완주군				
278	"		792 -7	792 -7	도	221	221	221		완주군				
279	"		793 -2	793 -5	답	2,315	1,285	1,335	경기도 과천시 교하읍 동패리1698 책향기마을동문굿모 닝힐 1016-2**	김*근				
280	"		793 -3	793 -3	도	633	633	633		완주군				

281	"		745 -2	745 -3	답	190	46	45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0*	이*성					
282	"		745 -1	745 -1	도	23	23	23		완주군					
283	"		1002	1002	구	37,013	1,412	1,412		국(농림 수산부)					
284	"		743 -1	743 -5	답	2,572	779	796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862-*	김*광					
285	"		743 -3	743 -3	도	365	365	365		완주군					
286	"		1035	1035	도	566	44	44		국(건설 부)					
287	"		742 -2	742 -7	전	1,501	697	70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2 거성프라자아파트 7**호	박*수	근저 당	전주 시 완산 구 중화 산동 2가 195- 1*	곽* 운		
288	"		742 -4	742 -4	도	149	149	149		완주군					
289	"		741 -1	741 -1	도	163	162	162		완주군					
290	"		742 -5	742 -8	답	690	443	456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23-*	강*환					2분 의1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23-*	임*화					2분 의1
291	"		742 -6	742 -6	도	277	277	277		완주군					
292	봉동 읍	고천 리	494 -1	494 -6	답	1,880	937	924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17*	이*준					
293	"		494 -4	494 -4	도	346	346	346		완주군					

294	"	495 -2	495 -3	답	170	70	66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41-27 간석주공아파트36-1 **	이*영					5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94-1 궁전아파트 1동 2**호	이*봉					5분 의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202-2 미도아파트 19동 5**호	이*철					5분 의1
								전주시 서완산동2가 341-*	이*서					5분 의1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14*	이*준					5분 의1
295	"	495 -1	495 -1	도	36	36	36		완주군					
296	"	500 -1	500 -8	답	495	193	187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63, 204동7**호(서신동, 서신2차동아아파트)	최*순					
297	"	500 -2	500 -2	도	83	83	83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63, 204동7**호(서신동, 서신2차동아아파트)	최*순					
298	"	500 -7	500 -7	답	89	89	89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63, 204동7**호(서신동, 서신2차동아아파트)	최*순					
299	"	500 -6	500 -6	도	148	148	148		완주군					
300	"	500 -5	500 -5	도	39	37	37		완주군					
301	"	500 -4	500 -4	도	7	7	7		완주군					

302	"		501 -1	501 -6	답	1,590	475	479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33길9-*, (중곡동)	김*순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7-2*(도도동)	박*두				2분 의1
303	"		501 -4	501 -4	도	225	225	225		완주군				
304	"		501 -2	501 -2	도	192	7	7		완주군				
305	"		493 -2	493 -6	전	1,236	473	478	완주군 봉동읍 고천길 38-*	이*호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3 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06	봉동 읍	고천 리	493 -4	493 -4	도	40	40	40		완주군				
307	"		502 -7	502 -7	도	139	139	139		완주군				
308	"		502 -8	502 -8	도	110	110	110		완주군				
309	"		493 -1	493 -5	전	1,437	488	495	완주군 봉동읍 고천길 38-*	이*호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3 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10	"		493 -3	493 -3	도	180	180	180		완주군				

311	"	492	492 -4	답	1,735	834	839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1길 18-*(서신동)	이*기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완산 구 기린 대로 232( 서노 송동) (서부 지사 무소)	전주 농업 협동 조합
312	"	492 -1	492 -1	도	391	391	391		완주군			
313	"	503 -10	503 -13	답	111	54	63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14*	박*석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0- 1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14	"	503 -9	503 -9	도	22	22	22		완주군			
315	"	503 -11	503 -11	도	17	17	17		완주군			
316	"	503 -12	503 -14	답	170	38	40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996-*	소*일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0- 1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17	"	490	490 -3	답	1,376	980	967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37*	배*환			
318	"	490 -1	490 -1	도	540	540	540		완주군			

319	"		488	488 -1	답	2,073	786	797	군산시 나포면 미루매길6*	유*옥					2분 의1
									익산시 고봉로24길 18, 302동3**호(영등동, 영등2차제일아파트)	문*자	근저 당	완주 군 삼례 읍 삼례 로 356	삼례 신용 협동 조합		2분 의1
320	"		487	487	답	397	397	39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106동8** 호	노*숙					
321	"		487 -1	487 -1	도	553	553	553		완주군					
322	"		485	485 -3	답	2,766	1,452	1,456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303 우성해오름아파트 104동6**호	김*립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금암 동 669- 2(영 업부)	(주)전 북은 행		
323	"		485 -1	485 -1	도	369	369	369		완주군					
324	봉동 읍	고천 리	506 -4	506 -4	도	11	10	10		완주군					
325	"		507 -3	507 -3	도	222	222	222		완주군					
326	"		484	484 -3	답	1,228	1,082	1,093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692-3 대방샤인힐아파트 801-1***	조*호					
327	"		484 -1	484 -1	도	648	648	648		완주군					

328	"	1006	1006	도	661	63	63		국(건설부)					
329	"	233	233-3	답	2,514	1,321	1,328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57-*	이*모	근저당, 지상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98(중화산동2가)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		
330	"	233-1	233-1	도	370	370	370		완주군					
331	"	236-1	236-1	도	252	252	252		완주군					
332	"	237-5	237-8	답	1,210	287	287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45, 105동1***호(송천동1가,송천아이파크)	손*수					2분의1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45, 105동1***호(송천동1가,송천아이파크)	유*숙					2분의1
333	"	237	237-7	답	2,976	798	761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17*, (효자동3가)	유*애					3분의1
								정읍시 하신경 9길14-21, 104동 3**호(상동, 현대아파트)	유*임	근저당	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468	구림농업협동조합		6분의1
									유*애					3분의1

										유*애				6분 의 1
334	"		237 -1	237 -1	도	479	479	479		완주군				
335	"		239	239 -6	답	2,053	1,152	1,156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17, 4**호(우아동2가)	서*창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17, 4**호(우아동2가)	서*혁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완산 구 기린 대로 232 (서노 송동)	전주 농업 협동 조합	2분 의1
336	"		239 -5	239 -5	답	39	39	39	군산시 나운 안1길24, 404동1***호(나운동, 나운4차현대아파트)	김*자				2분 의1
									익산시 고봉로24길 18, 302동 3**호(영등동, 영등2차제일아파트 )	박*희				2분 의1
337	봉동 읍	고천 리	239 -4	239 -4	도	237	237	237		완주군				
338	"		239 -2	239 -2	도	347	347	347		완주군				
339	"		238	238 -4	답	3,144	137	7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76-*	김*미				

340	"	241	241 -4	답	911	804	796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2-1 한신코아아파트6동2 **호	김*배	근저 당	전주 시 덕진 구 인후 동1 가 561 인후 아파 트 110 동 50* 호	김* 석		
341	"	240 -2	240 -2	도	11	11	11		완주군					
342	"	241 -2	241 -2	도	495	495	495		완주군					
343	"	237 -3	237 -3	도	11	11	11		완주군					
344	"	238 -1	238 -1	도	18	18	18		완주군					
345	"	253	253 -1	답	1,656	22	23	전주시 송천동1가 117 송천우림아파트101- 4**	김*희					
346	"	252 -2	252 -6	답	455	401	404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82*	이*철					
347	"	252 -4	252 -4	도	76	76	76		완주군					
348	"	252 -1	252 -5	답	2,140	984	9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126-1*	이*용					
349	"	252 -3	252 -3	도	209	209	209		완주군					

350	"		244	244 -1	답	1,729	370	376	충북 청주시 홍덕구 향정동 84-4 하이닉스남자기숙사 비동 9**호	이*근				
351	"		243	243 -2	전	302	237	238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107-*	이*춘				
352	"		243 -1	243 -1	도	15	15	15		완주군				
353	"		242 -2	242 -3	답	383	146	326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87*	고*이				
354	"		242 -1	242 -1	도	220	219	219		완주군				
355	"		222 -1	222 -1	도	33	33	33		완주군				
356	봉동 읍	고천 리	222 -2	222 -2	답	36	36	36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03*	손*배				
357	"		221 -2	221 -2	답	42	42	4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03*	임*철				
358	"		221 -1	221 -1	도	61	61	61		완주군				
359	봉동 읍	성덕 리	1350	1350	구	60,120	3,513	3,513		국(농림 수산부)				
360	"		1150	1150 -1	답	2,483	8	9	완주군 봉동읍 봉미로176, 103동 1***호(봉동제일오 투그란테아파트)	손*희	근저 당	완주 군 고산 면 읍내 리 881( 비봉 지소)	고산 농업 협동 조합	

										완주 군 고산 면 고산 로 77 (비봉 지점)	고산 농업 협동 조합		
361	"	1149	1149	답	79	79	79	전주시 금암동 1586-7 아파트3**호	손*배				
362	"	1148	1148 -1	답	294	269	268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57-*	이*모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23	완주 새마 을금 고	
363	"	1145 -1	1145 -1	도	137	137	137		완주군				
364	"	1146 -4	1146 -4	도	4	4	4		완주군				
365	"	1147 -3	1147 -3	답	485	485	48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85 현대3차아파트 304동 1***호	조*식				
366	"	1147 -2	1147 -2	도	375	375	375		완주군				
367	"	1147 -4	1147 -4	도	103	103	103		완주군				
368	"	813 -2	813 -2	답	445	445	445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77, 102동4**호(영등포 동7가,경남아스너빌)	이*창	근저 당, 지상 권	서울 시 중구 쌍림 동 22-1	(주)백 산	채무 자 :(주) 중* 이연 씨

369	"		813 -1	813 -1	도	524	524	524		완주군				
370	"		814 -8	814 -8	도	128	128	128		완주군				
371	"		814 -7	814 -7	도	57	57	57		완주군				
372	"		815 -3	815 -3	도	33	33	33		완주군				
373	"		1394	1394	도	489	31	31		국(건설부)				
374	봉동읍	성덕리	812	812 -1	전	1,752	608	615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10, 102동1***호(봉동광 신프로그램스아파트 )	김*숙	근저당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23	완주 새마을 금고	
375	"		811	811 -1	전	1,342	38	41	전주시 완산구 건원로100, 101동5**호(중노송 동,기린봉아파트)	이*숙				
376	"		807	807 -1	답	198	67	7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4*	이*경				
377	"		1395	1395	도	76	63	63		국(건설부)				
378	"		748	748 -1	전	1,531	3	3	전주시 덕진구 장재길1*, (우아동3가)	이*녀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장재길1*, (우아동3가)	강*				2분 의1
379	"		743 -2	743 -3	전	645	17	18	전주시 덕진구 연봉길2*, (전미동1가)	문*라				

380	"	742	742 -1	전	820	1	1	군산시 대야만 지경리 699-147 한신타운8**	조*숙				
381	"	806 -2	806 -2	전	177	177	177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1018-7, 104동7**호(여의동, 푸른솔아파트)	김*영				
382	"	806 -1	806 -1	도	90	81	81		완주군				
383	"	750	750 -3	답	1,704	805	802	완주군 봉동읍 신덕길 2*	이*영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3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84	"	750 -1	750 -1	도	298	294	294		완주군				
385	"	751	751 -3	답	2,991	242	242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7* (우아동1가)	정*우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7* (우아동1가)	정*안				
386	"	751 -1	751 -1	도	78	78	78		완주군				
387	"	753	753 -3	답	1,887	206	211	전주시 덕진구 전미월평1길 1* (전미동2가)	임*화				
388	"	753 -1	753 -1	도	72	72	72		완주군				

389	"		756	756 -3	답	1,004	271	271	완주군 봉동읍 성덕길 6*	유*언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3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390	"		756 -1	756 -1	도	117	115	115		완주군			
391	봉동 읍	성덕 리	757	757 -3	답	2,425	367	374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666 두정4차푸르지오 403-9**	이*태			
392	"		757 -1	757 -1	도	186	186	186		완주군			
393	"		772	772 -3	답	2,287	500	50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2**	이*문			
394	"		772 -1	772 -1	도	238	238	238		완주군			
395	"		771	771 -3	답	2,348	261	265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01*	손*배			
396	"		771 -1	771 -1	도	122	122	122		완주군			
397	"		770	770 -1	답	1,078	245	253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39-2 공영아파트101동 1***호	이*철			
398	"		769 -8	769 -8	도	46	46	46		완주군			
399	"		769 -7	769 -7	도	142	142	142		완주군			

400	"	769 -1	769 -9	전	612	20	26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495, 5동2**호(우아동3가, 우신아파트)	최*호	가등 기	익산 시 무왕 로21 길 18, 802 동11 0*호 (부송 동, 제일 까지 샘아 파트)	유* 신	493 분의 146. 5
										가등 기	서울 시 성동 구 금호 로 160- * (금호 동1 가)	이* 기	493 분의 100
401	"	769 -6	769 -6	전	204	204	204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1*	이*선				
402	"	769 -5	769 -5	도	117	117	117		완주군				
403	"	766	766 -3	답	1,873	529	533	전주시 완산구 전동 136-1*	배*순				2분 의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엘지동아아파트 105동 7**호	이*태				2분 의1
404	"	768 -1	768 -1	도	44	44	44		완주군				

405	"		767 -1	767 -1	도	45	45	45		완주군				
406	"		766 -1	766 -1	도	192	192	192		완주군				
407	"		765	765 -3	답	1,792	457	47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박*순				9분 의3
	봉동 읍	성덕 리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영				9분 의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혁				9분 의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진				9분 의2
408	"		765 -1	765 -1	도	224	224	224		완주군				
409	"		764	764 -3	답	335	125	13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박*순				9분 의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영				9분 의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혁				9분 의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진				9분 의2
410	"		764 -1	764 -1	도	65	65	65		완주군				
411	"		763	763 -3	답	1,869	443	456	완주군 봉동읍 성덕길 114-7	이*형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33	봉동 농업 협동 조합	
412	"		763 -1	763 -1	도	159	159	159		완주군				

413	"		761	761	답	126	126	126	부산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12, 102동2001호(대연동, 부산대연동푸르지오 )	이*업					2분 의1
									울산시 남구 신천로 45, 107동201호(야음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	이*회					2분 의1
414	"		761 -1	761 -1	도	146	146	146		완주군					
415	"		760 -1	760 -6	답	478	153	160	부산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12, 102동2***호(대연동, 부산대연동푸르지오 )	이*업					2분 의1
									울산시 남구 신천로 45, 107동2**호(야음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	이*회					2분 의1
416	"		760 -4	760 -4	도	71	71	71		완주군					
417	"		760 -3	760 -3	도	79	5	5		완주군					
418	"		1387	1387	도	1,072	49	49		국(건설부)					
419	봉동 읍	성덕 리	702 -3	702 -3	도	175	33	33		완주군					
420	"		702 -1	702 -8	답	3,638	446	44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90 광진아파트105동 1***호	문*균					
421	"		702 -6	702 -6	도	141	138	138		완주군					

422	"	701	701-3	답	1,147	443	456	익산시 변영로8길 223, 104동 1***호(평화동,평화동제일아파트)	김*임	근저당, 지상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56	삼례신용협동조합	3분의2
								익산시 익산대로 10길 52-*, (인화동1가)	유*애				3분의1
423	"	701-1	701-1	도	214	208	208		완주군				
424	"	98-4	98-4	도	18	16	16		완주군				
425	"	699	699-3	답	5,453	508	508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7*	이*우				
426	"	699-1	699-1	도	215	214	214		완주군				
427	"	1367	1367	도	1,373	58	58		국(건설부)				
428	"	242	242-3	답	446	147	145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69-*	이*				
429	"	242-1	242-1	도	63	63	63		완주군				
430	"	243	243-3	답	529	150	15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819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104-1***	모*길				
431	"	243-1	243-1	도	66	66	66		완주군				
432	"	244-2	244-3	답	351	88	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819 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 104-1***	모*길				

433	"		244 -1	244 -1	도	41	41	41		완주군				
434	"		246	246 -1	전	926	225	2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80번길 15-8, 3**호(영빈아트빌라 )	김*미				
435	"		245 -2	245 -2	전	110	110	110	충남 계룡시 장안로75, 110동1**호(금암동, 우림루미아트아파트 )	조*진				
436	"		245 -1	245 -1	도	161	161	161		완주군				
437	부동 읍	성덕 리	227 -1	227 -1	도	45	45	45		완주군				
438	"		258 -3	258 -5	전	545	18	2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상산타운 102동 1**호	김*화				
439	"		259	259 -2	전	363	292	293	완주군 봉동읍 신성덕길 101-*	이*례	근저 당, 지상 권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 123	완주 세마 을금 고	
440	"		260	260 -2	전	316	292	306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55, 106동6**호(중화산 동2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권*				
441	"		259 -1	259 -1	도	30	30	30		완주군				
442	"		260 -1	260 -1	도	120	116	116		완주군				

443	"	258 -2	258 -4	전	89	34	3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상산타운 102동 1**호	김*화					
444	"	261 -2	261 -2	전	341	341	341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37-17, 105동1***호(송천동 1가,송천케이씨씨스 위첸)	김*진	가등 기	서울 시 송파 구 올림픽로 99, 167 동1* **호 (잠실 동, 잠실 엘스)	김* 연		
445	"	261 -5	261 -5	도	215	215	215		완주군					
446	"	262	262 -1	전	337	171	18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35-*	윤*원					5분 의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35-*	이*명					5분 의2
447	"	263	263 -1	전	787	361	37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8*	이*우					

448	"		261 -1	261 -1	전	91	91	91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37-17, 105동1***호(송천동 1가,송천케이씨씨스 위첸)	김*진	가등 기	서울 시 송파 구 올림 픽로 99, 167 동1* **호 (잠실 동, 잠실 엘스)	김* 연		
449	"		261 -3	261 -3	도	107	107	107		완주군					
450	"		264	264	전	105	105	105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7*	이*민					
451	"		264 -1	264 -1	도	117	117	117		완주군					
452	"		265 -2	265 -2	전	59	59	59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류*레					
453	"		265 -1	265 -1	도	107	107	107		완주군					
454	"		255 -1	255 -4	대	304	2	3	완주군 봉동읍 신성덕길 11*	이*웅					
455	봉동 읍	성덕 리	1369	1369	도	63	14	14		국(건설 부)					
456	"		266	266 -2	대	670	550	564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8*	이*우					
457	"		267 -2	267 -2	대	40	40	4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류*레					
458	"		267 -1	267 -1	도	232	232	232		완주군					
459	"		266 -1	266 -1	도	133	130	130		완주군					

460	"	268 -3	268 -3	도	2	2	2		완주군				
461	"	268 -4	268 -4	도	1	1	1	전주부 대정정 6정목 19	이*구				
462	"	253 -1	253 -3	답	3,309	8	11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11, 302동5**호(송천동2 가,현대3차아파트)	최*숙	근저 당, 지상 권	전주 시 덕진 구 송천 로12 (송천 동1 가)	전주 송천 새마 을금 고	
463	"	253 -2	253 -4	도	50	14	11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1*	이*우				
464	"	1366	1366	도	488	133	133		국(건설 부)				
465	"	282 -2	282 -10	도	76	3	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우				
466	"	282 -4	282 -4	도	10	10	10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우				
467	"	282 -7	282 -7	도	3	3	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6*	이*우				
468	"	282 -8	282 -11	답	1,361	157	165	익산시 고봉로34길 35, 505동 6**호(영등동,영등3 차제일아파트)	홍*정				
469	"	282 -1	282 -1	답	351	351	351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34, 101동 7**호(서신동, 비사벌아파트)	박*수				
470	"	282 -5	282 -5	도	253	253	253		완주군				

471	"		283 -2	283 -2	전	202	83	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121동7**호(서현동, 한신아파트)	이*돈				
472	"		280	280 -1	대	126	52	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121동7**호(서현동, 한신아파트)	이*돈				
473	"		281	281	대	131	131	1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121동7**호(서현동, 한신아파트)	이*돈				
474	봉동 읍	성덕 리	281 -1	281 -1	도	28	28	28		완주군				
475	"		270 -1	270 -1	도	77	77	77		완주군				
476	"		271 -1	271 -1	도	56	56	56		완주군				
477	"		278	278 -1	대	740	119	120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125-*	이*민				740 분의 504
									전주시 덕진구 솔내4길 15, 1***호(송천동1가, 오성비둘기아파트)	이*희				740 분의 236
478	"		277	277 -1	대	258	124	131	완주군 봉동읍 신덕성덕길 110-*	이*민				258 분의 26
									전주시 덕진구 솔내4길 15, 1***호(송천동1가, 오성비둘기아파트)	이*희				258 분의 232
479	"		272 -2	272 -3	대	241	234	131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7*	최*순				

480	"		272 -1	272 -1	도	127	127	127		완주군				
481	"		275	275 -1	대	331	293	301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8*	이*우				
482	"		274 -2	274 -2	전	252	252	25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0*	이*우				
483	"		274 -1	274 -1	도	295	295	295		완주군				
484	"		273 -1	273 -1	도	118	118	118		완주군				
485	"		1358 -11	1358 -11	구	34,191	285	285		국(농림 수산부)				
486	봉동 읍	낙평 리	1118 -22	1118 -22	구	3,592	133	133		국(농림 축산식 품부)				
487	"		1180	1180 -1	답	132	34	33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9-*	이*길				
488	"		1179	1179	답	114	114	114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1*	이*원				
489	"		1177 -3	1177 -3	답	95	95	95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7, 4**호(자양동, 한강성원아파트)	이*우				
490	"		1179 -1	1179 -1	답	2	2	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김*봉				미등 기
491	봉동 읍	낙평 리	1177 -2	1177 -2	도	213	146	146		완주군				
492	"		1169 -2	1169 -3	전	483	25	27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129-*	이*길				
493	"		1178	1178 -1	답	714	434	434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7*	이*길				
494	"		1170 -3	1170 -6	답	1,398	28	29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1-1*	박*연				

495	"	1175	1175 -3	답	1,090	933	939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4동 1**호	문*석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2- 6	봉동 새마 을금 고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2- 6	완주 새마 을금 고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2 3	완주 새마 을금 고	
496	"	1176 -2	1176 -2	답	44	44	44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7, 4**호(자양동, 한강성원아파트)	이*우				
497	"	1176 -1	1176 -1	도	189	162	162		완주군				
498	"	1175 -1	1175 -1	도	166	143	143		완주군				

499	"	1170 -1	1170 -5	답	923	81	82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주공아파트 204동 1**호	문*석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2- 6	봉동 새마을 금고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2- 6	완주 새마을 금고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2 3	완주 새마을 금고
500	"	1170 -2	1170 -2	답	388	388	388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주공아파트 204동 1**호	문*석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장기 리 332- 6	봉동 새마을 금고
										근저 당	완주 군 봉동 읍 봉동 동서 로12 3	완주 새마을 금고

501	"		1171 -2	1171 -2	도	1,283	1,283	1,283		완주군				
502	"		1171	1171 -5	답	2,050	1,568	1,567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4길 9, 1***호(자양동, 자양2차현대아파트)	이*욱				2분 의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17, 4***호 (자양동, 자양2차현대아파트)	이*우				2분 의1
503	"		1164 -3	1164 -6	답	1,544	791	798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3길 10, 6동 1***호(우아동3가, 럭키우아아파트)	장*례				
504	봉동 읍	낙평 리	1164 -4	1164 -4	도	41	41	41		완주군				
505	"		1164 -1	1164 -5	답	2,109	59	6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	백*기				
506	"		688 -3	688 -11	답	1,838	1,237	1,253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85-*	함*진	근저 당	전남 나주 시 그린 로 20(빛 가람 동)( 전주 완주 임실 지사)	한국 농어 촌공 사	
507	"		687	687	답	1,991	1,991	1,991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85-*	함*진	근저 당	전남 나주 시 그린 로 20(빛 가람 동)( 전주 완주 임실 지사)	한국 농어 촌공 사	

508	"	687 -1	687 -1	도	1,166	1,126	1,126		완주군				
509	"	688 -2	688 -10	답	1,109	955	965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	이*군				
510	"	688 -1	688 -1	답	33	33	33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	이*군				
511	"	688 -4	688 -4	도	268	197	197		완주군				
총 계		511		필지	671,721	147,199	<b>147,333</b>						